

종합감사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2022년 영주시 경상북도종합감사 —

2022. 9.



# 1. 일람표

(단위 : 천 원)

번호	소관	건명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시정	주의	회수	금액	감액	금액	추징	금액
계		28건	14	12	4	159,616	5	262,803	1	10,300
1	■ ■ 과 □ □ □ □ 실	퇴직예정공무원 지원 부적정		1						
2	■ ■ 과	근속승진 부적정		1						
3	■ ■ ■ ■ 과	의료급여사업 추진 부적정	1		1	69,090				
4	▤ ▤ ▤ ▤ 과	투자이행에 따른 입지시설보조금 지급 부적정	통보							
5	▤ ▤ ▤ ▤ 과 ○ ○ 과	공장설립 미승인 건축물 허가 등 부적정		1						
6	▨ ▨ ▨ ▨ ▨ 과	효문화진흥원 건립사업 추진 등 부적정	기관경고 통보							
7	▨ ▨ ▨ ▨ 과	쓰레기 종량제 봉투 구매 다수공급자 2단계경쟁 미실시		1						
8	▨ ▨ ▨ ▨ 과	음식물류 폐기물 운반·처리 대행 용역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1						
9	▩ ▩ ▩ ▩ 과	게임산업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미이행	1							
10	■ ■ 과	개발사업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미통보	1							
11	○ ○ 과	산지전용허가(협의) 부적정		1						
12	▲ ▲ ▲ ▲ ▲ 과	가스, 석유관련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부적정 및 고발 미조치		1						
13	▤ ▤ ▤ ▤ 과	공장등록 변경사항 지연신청 과태료 미부과	1						1	10,300
14	▽ ▽ ▽ ▽ 과	농어촌민박사업 사후관리 부적정	1							

번호	소관	건명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시정	주의	회수	금액	감액	금액	추징	금액
15	● ○ 과 ○ ○ 과	농지개간사업 및 산지전용 허가업무 사후관리 부적정	1							
16	○ ○ 과	개발행위 허가업무 사후관리 부적정	1							
17	■ ■ ■ ■ 소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제한지역 내 건축허가 협의 부적정		1						
18	■ ■ ■ ■ 소	계약보증금 세입 조치 업무 등 처리 부적정		1						
19	⊖ ⊖ 과	⊙⊙소하천 정비공사 추진 부적정	1				1	47,391		
20	⊖ ⊖ 과	⊙⊙ ⊙⊙다리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1						
21	● ○ 과	⊙⊙면 ⊙⊙리 양수장 설치공사 부적정	1							
22	● ○ 과	도로 선형개량공사 추진 부적정	1				1	56,073		
23	⊖ ⊖ ⊖ ⊖ 과, ■ ■ ■ ■ 소	⊙⊙⊙⊙⊙⊙훈련장 관리소홀 및 수도요금 감면 부적정		1						
24	■ ■ ■ ■ 과	⊙지구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개발공사 추진 부적정	1		1	29,196				
25	● ● ● ● 과	⊙⊙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및 ⊙⊙⊙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추진 부적정	1		1	41,530	1	92,226		
26	■ ■ ■ ■ 소	⊙⊙면 농어촌생활용수 공급사업(1차 공사분 및 ⊙⊙·⊙⊙지구) 추진 부적정	1		1	19,800	1	3,100		
27	○ ○ 과	건축허가(신고) 업무 부적정		1						
28	◆ ◆ ◆ ◆ 과	⊙⊙⊙⊙⊙공원 및 지하주차장 복합시설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1				1	64,013		

# 경 상 북 도

## 주 의 요 구

제 목 퇴직예정공무원 지원 부적정  
소 관 청 영주시  
관 계 부 서 ■■■과, □□□□실  
내 용

영주시에서는 퇴직예정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로에 대한 노고를 격려하고 사회적응을 지원한다는 목적으로 매년 연수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방재정법」 제38조 제2항에서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 제150호, 2020. 7. 21.)」 제6조 제2항 [별표 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르면 편성목 포상금(303-01)으로 ①모범공무원 산업시찰(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모범공무원 산업시찰경비, 나. 배우자를 동반할 경우 배우자에 대한 산업시찰경비) ②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생계비지원에 필요한 경비, ③국제기술협력규정에 의한 해외파견공무원의 학자금, ④지방재정법 제48조에 의한 예산성과금 및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의한 공무원자녀 보육비 지원, ⑤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에 대한 원인행위가 없이 일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급여하는 포상금 및 상여금(단,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 의한 경우 포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위 기준은 2021. 7. 19. 일부 개정되어(행정안전부 훈령 제200호) [별표 11] 포상금 ⑤항에서 공무원에 대하여 급여하는 포상금 및 상여금을 “객관적 공적심의 절차 없이 장기근속·퇴직(예정) 공무원(가족포함)에 대한 단순 일률적 지원 목적의 예산 편

성 불가”함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20. 1. 1.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 99호, 2021. 1. 1. 폐지)」 제3장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집행지침’에서는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

같은 기준과 2021. 1. 1.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 훈령 제172호)」 [별표 5]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세부집행기준’에 따르면 모범공무원의 가족 등 공무원이 아닌 자를 산업시찰에 동반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조례·규칙에 근거 없이 그 동반자의 경비를 포상금으로 집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1)

그리고 「영주시 포상 조례(제1159호, 2019. 1. 1.)」 제15조에 따르면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영주시에서는 2021. 7. 19.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에 따라 당시까지 운영해 온 퇴직예정공무원 연수비 지원의 기준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공적심의 절차를 거쳐 객관적으로 공적이 인정된 퇴직예정공무원에 대해 지원하고, 포상 조례에 의한 포상금 지급 후에는 조례에서 정한 포상대장에 기록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영주시 ■■■과에서는 2019년 상반기까지 퇴직예정공무원 본인 국외 연수비(1인 한도 250만 원) 또는 공무원 본인과 동반 가족 1인에 대한 국내 연수비(1인 한도 75만 원)를 포상금으로 편성하여 지급하였고, 2019년 하반기<sup>2)</sup>부터는 비판적 여론을 이유로 퇴직예정공무원과 동반 가족 1인에 대해 국내 연수로 변경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포상금을 집행해오고 있다.

1)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외의 사항에서 배우자나 가족관련 언급은 없음.

개정 이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2020.7.21.)」에는 ‘303-01 포상금’에 대해

1.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나.배우자를 동반할 경우 배우자에 대한 산업시찰경비

5.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에 대한 원인행위가 없이 일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급여하는 포상금 및 상여금

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퇴직예정공무원의 가족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없음

\*영주시에서는 포상금 편성기준의 5.에 따라 퇴직예정공무원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고 답변함

2) 2019.8.7. ‘퇴직예정공무원연수방침 변경 안내’ 공문 시행(■■■과-17472) : 국외에서 국내 연수로 변경

연수비 지원을 받은 자 중 55명(2019년 24명, 2020년 6명, 2021년 20명, 2022년 5명)에 대해서는 공적심의 절차 이전에 포상금으로 연수비가 지급되었고, 공적심의 후 포상금 지원에 대해 포상대상 등재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배우자가 아닌 가족이 동반할 경우(2020~2022년 감사일, 8명) 공적심의 절차조차 거치지 않고 연수비가 지원되었다.<sup>3)</sup>

또한, 영주시 □□□□실은 그 동안 시행되어온 퇴직예정공무원 연수비 지원에 대해 공적심의 절차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2021. 7. 19. 예산편성 기준 개정에 따른 별도의 검토 없이 ■■■과의 예산 편성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여 개정 이전과 동일하게 2022년에도 포상금 과목으로 “퇴직예정공무원 연수비” 75,000천 원<sup>4)</sup>을 편성하였다.

[표] 포상금 과목으로 지급된 퇴직예정공무원 지원 현황

회계연도	연수지 (국외/국내)	1인 지원한도	연수인원 (명)	총 지원금액 (원)	비 고
2019	국외 *단체 1회 실시	250만 원	13	32,500,000	본인 13
	국내	75만 원	32	16,912,200 (가족 8,244,000)	본인 17 배우자 15
2020	국내	75만 원	60	33,790,800 (가족 16,922,850)	본인 30 배우자 27 형제, 자매 등 3
2021	국내	75만 원	95	55,030,940 (가족 27,270,970)	본인 48 배우자 43 자녀, 자매 등 4
2022	국내	75만 원	20	12,617,800 (가족 6,308,900)	본인 10 배우자 9, 자녀1

\*개별 연수 실시 후 청구, 배우자 없는 경우 가족 동반 5건 포함

## 조치할 사항 영주시장은

① 앞으로는 퇴직예정공무원에 대해 객관적 공적심의 절차를 거치는 등 관련 법

3) 영주시에서는 포상 조례에 근거하여 포상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답변함

\*배우자는 공적심의를 거쳤으나 그 공적조서에 공적사항으로 ‘1.지극한 효행, 2.훌륭한 어머니(아버지), 3.헌신적 내조’ 등 동일한 구성과 내용으로 기재됨. 일부 공적조서의 경우 ‘공적요지’에서 배우자의 이름이 누락되는 등 형식적인 절차 이행

\*2021. 12월 공적조서 일부 발췌

○○○의 공적조서 “상기인은 남편인 의 34년간 공직생활을 하는데 있어”

●●●의 공적조서 “상기인은 남편인 의 30년간 공직생활을 하는데 있어”

●●●의 공적조서 “상기인은 남편인 의 41년간 공직생활을 하는데 있어”

4) 2021년 ■■■과 예산서 (303-01)포상금 ○퇴직예정공무원 연수비 1,500,000원 \* 45명 = 67,500천원  
2022년 ■■■과 예산서 (303-01)포상금 ○퇴직예정공무원 연수비 1,500,000원 \* 50명 = 75,000천원

령 및 법령에서 위임된 규정에 맞게 지원되도록 예산을 편성·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경 상 북 도

## 주 의 요 구

제 목        근속승진 부적정  
소 관 청     영주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영주시 ■■■과에서는 소속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 승진 등 인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의2 제2항에서는 공무원의 정원을 통합·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대상자는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경과해야 하고, 승진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어야 하며, 7급의 경우 11년 이상 재직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98호, 2019. 12. 26.)」 ‘VI. 승진임용 2. 근속승진’에 따르면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근속승진 대상자가 있어도 일반승진으로 심의하여야 하며, 통상적인 결원이 발생한 경우 근속승진기간에 근접한 장기근속자가 일반승진 적격자임에도 단기간 내에 근속승진이 가능함을 이유로 일반승진대상에서 제외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주시 ■■■과에서는 결원으로 인한 7급에서 6급으로 일반승진 임용을 할 때, 단기간 내에 근속승진이 가능한 승진 후보자를 배제하지 않고 근속승진 가능 여부와 구분없이 승진 대상자로 하여 일반승진 임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영주시 ■■■과에서는 [표]와 같이 2020년, 2021년 ▲▲ 7급 1명, ▼▼ 7급 1명, ●●●● 7급 1명, □□□□ 7급 1명 총 4명에 대해 일반승진 임용 당시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되고 승진임용 배수 범위에 포함되는 등 일반승진이 가능함에도, 결원에 대해 다른 후보자들을 일반승진 하고, ▼▼ 7급 ●●●● 등 4명이 7급 경

력 11년이 도래되는 시기에 근속승진 임용한 사실이 있다.

[표] 일반승진 적격자임에도 근속승진 임용 현황

성명	7급 경력 11년 도래일	근속승진 일자	근속승진		전후 일반승진 일자	일반승진 당시 명부 순위 (명부기준일)
			전 직급	후 직급		
◀◀◀	2018.3.27.	2020.2.10.	▲▲7	▲▲6	2020.7.1. (1위 AAA 당시 7급 9년 11개월)	2위 (2020.2.5.)
●●●	2021.1.29	2021.2.9	▼▼7	▼▼6	2020.7.1. (2순위 BBB, 3위 CCC 승진)	1위 (2020.5.31.)
◐◐◐	2021.5.21.	2021.6.14	●●●●7	●●●●6	2022.1.1. (2위 DDD 승진)	1위 (2021.5.31.)
▽▽▽	2021.5.21.	2021.6.14	□□□□7	□□□□6	2021.7.1. (2위 EEE 승진)	1위 (2021.5.31.)

**조치할 사항 영주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경 상 북 도

## 시 정 요 구

제 목	의료급여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영주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영주시 □□□□과에서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통해 의료급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1.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관리 소홀

「의료급여법」 제16조, 제17조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수급권자의 소득, 재산 상황, 근로능력 등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수급자나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의 신청을 받아 의료급여의 내용 등을 변경할 수 있고, 의료급여의 내용 등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를 밝혀 수급권자에게 알리도록 되어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제1종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18세 미만인 자, 65세 이상인 자 등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의료급여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 2019)」 ‘국민기초 1종 수급권자 자격기준’에 따르면 65세 이상인 자는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1종 자격이 부여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지침 ‘의료급여증 발급’에 따르면 1종에서 2종 또는 2종에서 1종으로 수급자 자격이 변동된 경우 기존 의료급여증을 지체 없이 회수하고 변경된 내용에 맞게 새로운 의료급여증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의료급여법」 제3조,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의료급여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 2019)」의 규정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가 사망, 소득·재산 증가 등의 사유로 의료급여가 필요 없게 된 때에는 의료급여를 중지하고, 지체 없이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상실을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과에서는 [표 1]과 같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AAAA 등 8명이 연령도래로 의료급여 종별을 2종에서 1종으로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즉시 처리하지 않고 최대 215일 지연처리 하여 환급금액 357,650원이 발생하였다.

[표 1] 의료급여 종별변경 미처리 대상자 현황

(단위 : 원)

대상자				종별변경			처 리 지연일	환급금액
성명	생년월일	선정일자	선정시 종별	적정 종별	사유	실제처리일자		
계	8명							357,650
AAAA	1954.10.09.	2018.08.03.	2종	1종	연령도래	2019.10.21.	20일	1,500
BBB	1954.10.27.	2015.07.30.	2종	1종	연령도래	2019.10.21.	20일	4,500
CCC	1955.02.02.	2009.01.15.	2종	1종	연령도래	2020.04.01.	60일	1,000
DDD	1955.03.19.	2018.08.09.	2종	1종	연령도래	2020.06.01.	93일	3,000
EEE	1956.03.03.	2021.01.26.	2종	1종	연령도래	2021.06.01.	93일	2,000
FFF	1956.03.10.	2018.01.03.	2종	1종	연령도래	2021.07.01.	123일	6,040
GGG	1956.03.12.	2013.01.28.	2종	1종	연령도래	2021.08.01.	154일	1,500
HHH	1956.03.28.	2019.05.23.	2종	1종	연령도래	2021.10.01.	215일	338,110

※ 영주시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위 부서에서는 [표 2]와 같이 JJJ 등 10명의 의료급여 수급권 자격상실 처리를 최소 10일에서 최대 194일까지 지연하는 등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2] 의료급여 자격상실 처리 지연 현황

성명	생년월일	의료급여자격 상실 발생일자	의료급여자격 상실 처리일자	처리지연(일)	지연사유
계	10명				
JJJ	1998.07.08.	2019.05.08.	2019.05.24.	16	담당자 전산처리 지연
KKK	1936.04.15.	2019.05.14.	2019.05.24.	10	담당자 전산처리 지연
LLL	1992.04.03.	2019.05.14.	2019.05.24.	10	담당자 전산처리 지연
MMM	1933.09.15.	2019.09.12.	2019.12.03.	82	담당자 전산처리 지연
NNN	1951.03.21.	2020.02.07.	2020.08.19.	194	담당자 전산처리 지연
OOO	1972.01.22.	2020.04.22.	2020.06.08.	47	담당자 전산처리 지연
PPP	1939.07.22.	2020.05.17.	2020.08.19.	94	담당자 전산처리 지연
QQQ	1999.01.23.	2021.04.30.	2021.05.10.	10	담당자 전산처리 지연
RRR	1959.08.10.	2021.11.10.	2021.11.22.	12	담당자 전산처리 지연
SSS	1992.12.30.	2022.03.29.	2022.04.14.	16	담당자 전산처리 지연

※ 영주시 제출자료 재구성

## 2. 의료급여 부당이득금·구상금 징수 업무 처리 부적정

「의료급여법」 제23조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속임수 및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는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고 부당이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10일 이상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급하고, 납부기한 까지 부당이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납부대상자가 재산이 없거나 목적물인 총 재산의 견적가격이 체납처분비보다 적은 경우로 확인된 경우나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관계 법령에 의하여 당해 채권의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건 등은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의료급여법」 제19조, 「의료급여사업안내」에 따라 시장·군수는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의 범위에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구상금), 납부하지 않을 시 구상금 청구의 소를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제기하여 그 결과에 따라 민사상 강제 집행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31조 및 「민법」 제766조의 규정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시효만료 6개월 내 「민법」 제1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압류 등 시효중단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되어 있다.

따라서 영주시 ■■■■과에서는 수급자의 속임수 및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경우에 발생한 ‘부당이득금’ 과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수급자가 의료급여 비용을 받은 때 발생한 ‘구상금’ 을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징수하여야 하고, 납부대상자가 미납부 시 채권보전 조치(재산조회, 독촉, 압류 등)를 이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표 3]과 같이 감사대상 기간 동안 부과된 부당이득금과 구상금 총 23건에 대한 채권보전 조치를 하지 않았다.(징수율 7.9%)

[표 3] 미회수 부당이득금·구상금 현황

(단위 : 원)

연번	구분	채무자	부과일	부과액	징수액	잔액	채권보전 조치(일)
계		23건		75,090,230	5,999,940	69,090,290	-
1	부 이 득 금	○○○○	2019.06.14.	1,720,610	0	1,720,610	
2		◀◀요양병원	2019.07.11.	9,820	0	9,820	
3		◀◀요양병원	2019.07.11.	18,000	0	18,000	
4		◀◀요양병원	2019.07.11.	4,000	0	4,000	
5		◀◀요양병원	2019.07.11.	34,540	0	34,540	
6		◀◀요양병원	2019.07.11.	7,800	0	7,800	
7		◀◀요양병원	2019.07.11.	24,120	0	24,120	
8		□안과의원	2019.09.18.	6,180	0	6,180	
9		▲▲▲신경 외과의원	2019.10.08.	4,360	0	4,360	
10		◇◇◇	2019.12.24.	615,730	0	615,730	
11		◆◆	2020.03.30.	5,995,980	4,800,000	1,195,980	
12		▲▲▲	2020.06.17.	1,670,630	0	1,670,630	
13		▽▽▽	2020.10.12.	3,000	0	3,000	
14		♠♠♠	2020.10.22.	956,060	951,900	4,160	
15		♣♣♣	2021.08.10.	3,336,080	0	3,336,080	
16		♡♡♡	2021.10.27.	1,611,080	0	1,611,080	
17		♥♥산업	2022.02.28.	1,819,670	0	1,819,670	
18		●●●	2022.02.28.	948,040	248,040	700,000	
19		●●●	2022.02.28.	25,356,790	0	25,356,790	
20		●●●	2022.04.12.	13,411,050	0	13,411,050	
21	구 상 금	◎◎◎	2021.10.13.	6,393,670	0	6,393,670	
22		●●화재/ ○●시장	2022.04.25.	10,577,980	0	10,577,980	
23		●●화재/ ○●시장	2022.05.25.	565,040	0	565,040	

※ 영주시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감사대상 기간 중 [표 4]와 같이 징수 및 채권보전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총 79건, 18,721천 원의 채권이 소멸시효가 경과되어 징수권이 소멸되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으며, 사망자 등 징수 가능성이 낮고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건 등에 대하여 결손처분 등을 하지 않고 있다.

[표 4] 채권보전조치 미이행에 따른 소멸시효 경과 현황

(단위 : 원)

구분	부과연도	채무자	부과액	징수액	잔액	최종채권 보전조치일	시효 경과월
계		79건	19,621,000	900,000	18,721,000		
부 이 득 금	2015	□□□내과	5,670		5,670		2020.05.
	2016	○○○	1,830,390		1,830,390		2021.02.
	2016	○○○	1,853,300		1,853,300		2021.02.
	2016	○○○	2,023,300		2,023,300		2021.03.
	2016	■ ■ ■	1,183,400		1,183,400		2021.04.
	2016	○○○	1,965,020		1,965,020		2021.04.
	2016	⊕⊕⊕	6,000		6,000		2021.04.
	2016	⊙⊙⊙	8,000		8,000		2021.04.
	2016	◇◇◇	2,000		2,000		2021.04.
	2016	●●●	2,000		2,000		2021.04.
	2016	◆◆◆	9,760		9,760		2021.04.
	2016	◇◇◇	6,000		6,000		2021.04.
	2016	◆◆◆	7,250		7,250		2021.04.
	2016	< < <	8,640		8,640		2021.04.
	2016	◀ ▶ ▶	4,500		4,500		2021.04.
	2016	< < <	3,500		3,500		2021.04.
	2016	◀ ▶ ▶	14,160		14,160		2021.04.
	2016	< < <	54,000		54,000		2021.04.
	2016	◀ ▶ ▶	6,000		6,000		2021.04.
	2016	●●●	16,000		16,000		2021.04.
	2016	●●●	2,000		2,000		2021.04.
	2016	●●●	4,000		4,000		2021.04.
	2016	●●●	7,000		7,000		2021.04.
	2016	●●●	9,000		9,000		2021.04.
	2016	●●●	24,000		24,000		2021.04.
	2016	●●●	12,500		12,500		2021.04.
	2016	●●●	60,500		60,500		2021.04.
	2016	●●●	24,000		24,000		2021.04.
	2016	●●●	8,560		8,560		2021.04.
	2016	■ ■ ■	26,000		26,000		2021.04.
	2016	○○○	2,033,400		2,033,400		2021.05.
	2016	■ ■ ■	1,212,940		1,212,940		2021.05.
	2016	○○○	2,040,740		2,040,740		2021.06.
	2016	■ ■ ■	42,560		42,560		2021.06.
2016	○○○	1,910,930		1,910,930		2021.07.	
2016	□□□	1,109,230	900,000	209,230		2021.08.	
2016	□□□	30,920		30,920		2021.09.	
2016	□□□	97,500		97,500		2021.11.	
2016	□□□	30,000		30,000		2021.11.	

구분	부과연도	채무자	부과액	징수액	잔액	최종채권 보전조치일	시효 경과월
계		79건	19,621,000	900,000	18,721,000		
부 이 득 금	2017	☐☐☐	2,000		2,000		2022.04.
	2017	⊕⊕⊕	2,000		2,000		2022.04.
	2017	⊖⊖⊖	2,000		2,000		2022.04.
	2017	⊗⊗⊗	2,000		2,000		2022.04.
	2017	⊚⊚⊚	2,500		2,500		2022.04.
	2017	▽▽▽	2,500		2,500		2022.04.
	2017	∇∇∇	2,720		2,720		2022.04.
	2017	△△△	3,000		3,000		2022.04.
	2017	□□□	3,000		3,000		2022.04.
	2017	■ ■ ■	3,000		3,000		2022.04.
	2017	□ □ □	3,500		3,500		2022.04.
	2017	■ ■ ■	3,500		3,500		2022.04.
	2017	△△△	4,000		4,000		2022.04.
	2017	●●●	4,500		4,500		2022.04.
	2017	▲▲▲	4,500		4,500		2022.04.
	2017	▼▼▼	5,000		5,000		2022.04.
	2017	⊙⊙⊙	5,220		5,220		2022.04.
	2017	⊚⊚⊚	5,230		5,230		2022.04.
	2017	◆◆◆	5,500		5,500		2022.04.
	2017	△△△	6,000		6,000		2022.04.
	2017	○○○	6,000		6,000		2022.04.
	2017	▽▽▽	6,000		6,000		2022.04.
	2017	⊙⊙⊙	6,820		6,820		2022.04.
	2017	⊚⊚⊚	7,500		7,500		2022.04.
	2017	◇◇◇	8,500		8,500		2022.04.
	2017	◆◆◆	9,500		9,500		2022.04.
	2017	◆◆◆	10,000		10,000		2022.04.
	2017	◆◆◆	10,500		10,500		2022.04.
	2017	◆◆◆	11,000		11,000		2022.04.
	2017	◆◆◆	12,000		12,000		2022.04.
	2017	≡≡≡	12,710		12,710		2022.04.
	2017	≡≡≡	13,690		13,690		2022.04.
	2017	≡≡≡	14,190		14,190		2022.04.
2017	▨▨▨	16,000		16,000		2022.04.	
2017	▨▨▨	22,000		22,000		2022.04.	
2017	—	23,000		23,000		2022.04.	
2017	□□□	24,000		24,000		2022.04.	
2017	■ ■ ■	25,500		25,500		2022.04.	
2017	△△△	29,500		29,500		2022.04.	
구상금	2017	▶▶▶	1,586,250		1,586,250		2020.11.

※ 영주시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영주시장은**

- ①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하고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② 의료급여 종별 미처리에 따라 발생한 환급금 357,650원을 해당 대상자에게 환급하시기 바라며, 「의료급여법」 제19조, 제23조에 따라 부당이득금·구상금 체납액(69,090,290원)을 조속히 징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경 상 북 도

## 통 보

제 목 투자이행에 따른 입지시설보조금 지급 부적정  
소 관 청 영주시  
관 계 부 서 〇〇〇〇과  
내 용

영주시 〇〇〇〇과에서는 산업구조의 고도화,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촉진을 위하여 관내 투자 국내기업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영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22조에 의하면 시장은 지역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는 투자를 하고자 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입지 및 시설보조금을 투자금액의 일정비율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고, 지원비용은 고용창출,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2016. 6. 16. 영주시장 장욱현과 (주)〇〇엔지니어링 대표이사 〇〇〇는 투자협정에 관한 양해각서(MOU)<sup>5)</sup>를 체결한 후 같은 해 11. 2. 영주시투자유치 위원회를 개최 및 심의하여 투자금액 61억 원 및 신규고용 22명의 투자실적에 따른 영주시 보조금 지원액을 총 투자비가 20억 원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 범위 내인 164,000천 원으로 의결하였다.

따라서 MOU 체결 투자기업에 대한 영주시투자유치위원회의 보조금 지원비율 심의결과에 따라 실 투자금액에서 2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 내의 지원비율로 적정하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5) 제2조(투자계획) (주)〇〇엔지니어링은 영주시 일원에 2017년까지 총61억원(상시 고용인원 20명 이상)을 투자하여 베어링 부품제조공장을 건립한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주)■■■엔지니어링에 총 실투자금액 5,129,225천 원에서 20억 원을 초과한 3,129,222천 원의 4%인 125,169천 원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2018. 12. 17. 총 투자예상금액 61억 원 대비 실투자금액 4,548,512천 원에 대한 투자금액 달성률 74.6%를 투자유치위원회 의결 금액 164,000천 원에 적용한 122,288천 원을 1차 지급하였고,

이 후 추가로 투자된 580,713천 원에 대해 투자예상금액 61억 원 대비 달성률 9.5%로 산정하여 2019. 12. 13. 15,580천 원을 2차 지급하는 등 총 137,868천 원을 지급하여 12,699천 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

그 결과 투자유치위원회의 의결사항인 투자금액의 일정비율(4%) 범위를 초과하여 투자유치기업 (주)■■■엔지니어링에 보조금이 지원되어 특혜시비 및 보조금 지급에 관한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였다.

#### **조치할 사항 영주시장은**

- ① 투자기업 입지시설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통보하오니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지급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경 상 북 도

## 주 의 요 구

제 목	공장설립 미승인 건축물 허가 등 부적정
소 관 청	영주시
관 계 부 서	▣▣▣▣과, ○○과
내 용	

영주시 ○○과에서는 건축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의제협의 부서와 허가 협의 등 건축허가 업무를 담당하며, ▣▣▣▣과에서는 공장설립 승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건축법」 제11조에 의하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건축허가를 받으면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3조의2(인가·허가 등의 의제)와 제14조(공장의 건축허가)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허가 등이나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하면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하려는 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장설립승인신청은 공장건설을 위한 건축허가신청 또는 건축신고 전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건축허가 신청은 공장설립승인신청 후 접수 및 처리하여야 하며, 공장설립승인 신청이 없을 경우 건축허가 신청서에 대해 보완 요구 등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고 공장설립승인신청을 조건으로 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과에서는 2021. 11. 15. 건축주 (주)◀◀◀의 명의로 공장 용도의 건축(증축) 허가 신청서를 접수 후 같은 해 11. 18. 관련 부서에 협의 요청하였고, ㉹㉹㉹㉹과에서는 ○○과로부터 접수한 협의 요청 공문에 대해 관련 자료를 검토하면서 건축허가신청 전 공장설립승인 신청서를 접수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 신청 전 공장설립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보완 요구 등 적절한 조치도 하지 않은 채 같은 해 11. 25. “공장건축면적이 500㎡ 이상이면 공장설립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소극적 회신으로 공장설립승인 신청 절차에 대한 판단을 ○○과에 전가하였다.

그리고 ○○과에서는 2021. 11. 15. 건축허가신청서를 접수하면서 공장설립 승인 신청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11. 25. ㉹㉹㉹㉹과로부터 회신받은 위와 같은 검토 결과에 대해 공장설립승인 신청 및 승인 등 공장 용도 건축물 증축 허가 적법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데도 건축허가 전제 조건인 공장설립승인 신청 등에 대한 아무런 검토도 하지 않은 채 ㉹㉹㉹㉹과의 회신 내용을 건축허가 공문내용에 명시하여 같은 해 12. 8. 부적절하게 건축허가를 한 사실이 있다.

그 결과 공장설립 승인 없이 부적법하게 건축허가가 이루어져 특혜시비 및 다수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며 건축주 (주)◀◀◀이 공장설립 승인 등의 규정 위반으로 고발되어 분쟁을 야기하는 등 영주시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게 되었다.

#### 조치할 사항 영주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경 상 북 도

## 기 관 경 고 · 통 보

제 목 효문화진흥원 건립사업 추진 등 부적정  
 소 관 청 영주시  
 관 계 부 서 〇〇〇〇〇〇〇과  
 내 용

영주시 〇〇〇〇〇〇과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인 효문화진흥원 건립지역으로 선정되어 효문화진흥원 건립사업을 추진하였다.

[표] 효문화진흥원 건립 현황

(단위 : m<sup>2</sup>, 백만 원)

위치	사업기간	사업량		사업내용	사업비			
		부지	건축연면적		합계	국비	도비	시비
영주시 ㄱ면 ㄴ리 326번지 일원	2013 ~ 2018	14,336	1,762.44	연구전시관, 교육체험관, 소공원, 조경 및 편의시설 등	9,734	4,217	1,265	4,25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조에 의하면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보조금의 지급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면 효문화진흥원은 법인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영주시는 2013. 6. 10.부터 6. 11.까지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시비 미확보 사유, 토지보상 여부, 사후관리 방안 등 선비문화수련원, 한문화테마파크 등과 중복투자로 지적되어 사업포기를 종용받았고, 2014. 9.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시 “대형사업 유치 시 우리시 재정여건 고려”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지적되자 같은 해 12. 16. 시장 등이 참석한 효문화진흥원 건립사업 문제점 관련 정책회의를 개최하여 위와 같은 문제점을 재차 확인하였다.

따라서 영주시에서는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보조금 지급 목적에 부합되도록 보조금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후관리 비용 과다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및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사업포기 및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관련 법률상 효문화진흥원은 법인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 민간위탁이 불가한데도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민간위탁으로 운영비 등 재정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부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 2015. 9. 22. 보건복지부에 사업추진 약약을 제출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 후 총사업비 9,734백만 원의 효문화진흥원은 2016. 11. 착공하여 2018. 8. 준공되었고 민간위탁 등 운영비 문제가 발생되면서 법인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 등 사업 운영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2년간 방치되다가 2020. 7. 31. 경상북도 ★★★★★과로부터 “효문화진흥원 운영 정상화를 촉구”한다는 공문을 접수받고서야 운영 활성화 용역 및 재단법인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다.

또한, 위 부서에서는 영주시 □□□□과의 2020. 1. 4. 요청에 따라 효문화진흥원을 2020. 1. 14.부터 2021. 12. 31.까지 ○○○○사업단 및 ○○○○운영지원단 사무실로 사용하게 하고, 2020. 5. 13. 요청에 따라 2020. 5. 12.부터 전시시설 납품완료일까지 ○○○○테마파크 전시 관련 임시사무실로 사용하게 하여 국고보조금

으로 완공된 효문화진흥원이 목적 외 타 용도로 사용되던 중, 2021. 3. 19. 경상북도 ★★★★★과로부터 임시사용에 대한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효문화진흥원 시설 원상복구 및 조기 정상운영 촉구” 공문을 접수한 후 같은 해 4. 20. 사용하던 임시 사무실을 철거한 사실이 있다.

그 결과 효문화진흥원은 완공 후 감사일 현재까지 개원 및 운영되지 못하고 있고, 건립 목적과 달리 신설 부서 사무실 등으로 사용되었으며 시설유지비 예산이 2019년 25,061천 원, 2020년 51,268천 원, 2021년 62,716천 원, 총 139,045천 원 집행되는 등 영주시 재정 부담이 가중되었다.

#### 조치할 사항 영주시장은

- ① 부적절하게 효문화진흥원 건립 보조사업을 추진한 영주시에 대하여는 「경상북도 자체감사 규칙」 제18조에 따라 **기관경고 조치**하오니,(기관경고)
- ②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효문화진흥원이 보조사업 목적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경 상 북 도

## 주 의 요 구

제 목 쓰레기 종량제 봉투 구매 다수공급자 2단계경쟁 미 실시  
소 관 청 영주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영주시 ㉠㉠㉠㉠과에서는 조달청이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2019. 5월부터 2022. 6월까지 27회(구매금액 929백만 원)에 걸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구매하였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3조(2021. 2. 5. 제16954호부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3조(2020. 10. 1. 개정 이전 제7조의2)에 따르면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할 때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물품 공급계약(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수요기관의 장은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공급업체)로부터 조달청장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수요물자를 구매하려는 경우 2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그 제안서의 심사 결과에 따라 해당 수요물자의 납품업체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또한, 조달청 고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조달청 고시 제 2018-24호, 2019. 1. 1.)」 제2조, 제3조, 제6조, 제10조에 따르면 수요기관의 장은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1억 원 이상이면 나라장터종합쇼핑몰을 통해 5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2단계경쟁에 참여하도록 제안요청을 하여야 하며, 제안을 요청받은 계약상대자는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계약가격 이하로 제안하되, 최대 10% 범위에서 가격을 할인하여 제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기준 제5조에 따르면 수요기관의 장은 2단계경

쟁 회피를 목적으로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을 기준금액 미만으로 분할하여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회피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위 부서에서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구매금액을 1억 원 미만으로 분할하여 제3자단가계약에 의한 방법으로 구매할 것이 아니라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통해 구매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2019. 5월부터 2022. 6월까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구매하면서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1억 원을 초과하는데도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거치지 않고 아래 [표]와 같이 1억 원 미만으로 분할한 후 제3자단가계약에 의한 방법으로 구매하였다.

[표] 쓰레기 종량제 봉투 구매 2단계경쟁 미실시 내역 (2019. 5. ~ 2022. 6.)

(단위 : 천 원)

연번	구매내역	납품요구일	구매금액	업체명	계약방법
계			929,811		
1	2019 종량제 봉투 제작(4차)	'19.05.07	44,680	▲▲▲	제3자 단가계약
2	2019 종량제 봉투 제작(5차)	'19.06.13	73,500	"	"
3	2019 종량제 봉투 제작(6차)	'19.07.19	2,500	"	"
4	2019 종량제 봉투 제작(7차)	'19.09.17	9,500	"	"
5	2019 종량제 봉투 제작(8차)	'19.10.01	10,560	(주)◆◆	"
6	2019 종량제 봉투 제작(9차)	'19.10.24	14,350	"	"
7	2019 종량제 봉투 제작(10차)	'19.12.03	19,090	"	"
8	2020 종량제 봉투 제작(1차)	'20.01.22	34,945	"	"
9	2020 종량제 봉투 제작(2차)	'20.01.22	29,390	"	"
10	2020 종량제 봉투 제작(3차)	'20.02.05	29,144	◇◇◇◇◇	"
11	2020 종량제 봉투 제작(4차)	'20.02.20	27,890	(주)◆◆	"
12	2020 종량제 봉투 제작(5차)	'20.02.20	19,600	◇◇◇◇◇	"
13	2020 종량제 봉투 제작(6차)	'20.03.12	29,800	(주)◆◆	"
14	2020 종량제 봉투 제작(7차)	'20.03.12	29,220	●●●●●●●	"
15	2020 종량제 봉투 제작(8차)	'20.07.01	42,080	●●●●●●●	"
16	2020 종량제 봉투 제작(9차)	'20.08.26	3,730	(주)◆◆	"
17	2021 종량제 봉투 제작(1차)	'21.01.04	24,250	(주)◆◆	"

연번	구매내역	납품요구일	구매금액	업체명	계약방법
18	2021 종량제 봉투 제작(2차)	'21.01.06	60,840	●●●●●●●●	"
19	2021 종량제 봉투 제작(3차)	'21.01.14	22,580	(주)◆◆	"
20	2021 종량제 봉투 제작(4차)	'21.03.02	86,882	●●●●●●●●	"
21	2021 종량제 봉투 제작(5차)	'21.05.11	6,710	(주)◆◆	"
22	2021 종량제 봉투 제작(6차)	'21.06.15	30,850	●●●●●●●●	"
23	2021 종량제 봉투 제작(7차)	'21.09.08	7,650	●●●●●●●●	"
24	2022 종량제 봉투 제작(1차)	'22.01.06	42,952	(주)◆◆	"
25	2022 종량제 봉투 제작(2차)	'22.02.25	93,178	●●●●●●●●	"
26	2022 종량제 봉투 제작(3차)	'22.04.12	84,640	▲▲▲	"
27	2022 종량제 봉투 제작(4차)	'22.06.09	49,300	●●●●●●●●	"

**조치할 사항 영주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경 상 북 도

## 주 의 요 구

제 목           음식물류 폐기물 운반·처리 대행 용역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소 관 청       영주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영주시는 ▣▣▣▣과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영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운반·처리 대행 용역을 실시하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에 근거하여 2011년부터 (주)□□□□□와 수의계약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에 따르면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는 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14조 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및 한국환경공단 등에 해당하는 자로 되어 있다. 또한 「영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영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서 명시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업자란 폐기물처리업자 일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대상자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입찰에

부처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영주시에서는 2020, 2021년 음식물류 폐기물 운반·처리 용역 계약을 하면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에 따른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일반입찰에 부처 계약상대자를 결정해야 함에도 아래 [표]와 같이 (주)□□□□□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음식물류 폐기물 운반·처리 용역 수의계약 체결 현황

(단위 : 천 원)

사업명	계약금액	계약일자	위탁업체	계약기간	수의계약사유
2020년도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955,111	2019. 12.24	(주)□□□□□	2020. 1.1. ~ 12.31.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 사업목적이 경쟁성보다 공익성이 요구되어 안정적이고 성실한 업체와 계약 체결
2021년도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1,053,758	2020. 12.24	(주)□□□□□	2021. 1.1. ~ 12.31.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 사업목적이 경쟁성보다 공익성이 요구되어 안정적이고 성실한 업체와 계약 체결

**조치할 사항 영주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경 상 북 도

## 시 정 요 구

제 목 게임산업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미이행  
소 관 청 영주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영주시 ☐☐☐☐과에서는 게임제공업소의 등록과 폐업, 행정처분, 지도·감독 등 업무를 하고 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르면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여야 하고,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위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때 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의 행정처분을 취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또한,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르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등의 청소년 출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써 청소년 출입시간을 준수하도록 되어있고,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위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때(2차 위반시)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주시 ☐☐☐☐과에서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법률에서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법적 처분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위 부서에서는 ○○경찰서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AAAA랜드 외 1개 업소가 「게임산업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대상 업소임을 통보받고 2019. 5. 13.

AAAA랜드의 위반행위(사행행위)에 대해 청문실시를 통지하였으나, 위 업소의 요청으로 사법기관의 판단이 결정될 때까지 행정처분을 유보하다 2021. 3. 4. 판결이 결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되었음에도, 행정처분을 위한 판결조회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감사기간이 되어서야 등록취소 처분을 하였다.

또한, 2020. 5. 1. BBBBB PC방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청소년 출입시간 준수 위반 2차)에 대한 청문실시 통지 이후, 감사일 현재까지 행정처분(영업정지 1월)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 「게임산업법」 위반업소 수사기관 통보 내역

업소명 (대표자)	수사기관 통보일자	위반 사항	행정처분	비고
AAAA랜드 (CCC)	2019.5.9.	2019.3월초 ~ 2019.3.18. 게임기 40대 설치후 불특정 다수에게 게임물을 이용해 획득한 결과물에 대해 환전함(사행행위)	등록취소	
BBBBB PC방 (DDD)	2020.4.29.	2020.3.13. 00:40경 청소년 출입금지 시간임에도 청소년에게 컴퓨터게임 이용 제공(2차 위반)	영업정지 1월	

**조치할 사항 영주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위반사실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경 상 북 도

## 시 정 요 구

제 목 개발사업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미통보  
소 관 청 영주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영주시 ■■과에서는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 등 인·허가 업무를 하고 있다.

「자연환경보전법(제16806호, 2020. 6. 11.)」 제46조 및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제52조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시·도지사 위임)은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자연자산을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징수하도록 되어있으며, 그 부과대상은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중 개발면적 3만제곱미터이상인 개발사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47조에 따르면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의 인·허가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그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규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허가 등의 내용을 부과·징수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부과·징수기관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금액, 납부기한 등에 관한 사항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영주시 ■■과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중 개발면적 3만㎡ 이상인 사업을 인·허가할 때에는 그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련사항을 부과·징수기관인 경상북도에 통보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ㄱ동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2020. 2. 13.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해당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해 회신을 접수하고, 2021. 2. 18.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허가 사항을 부과·징수기관인 경상북도에 통보하지 않다가, 감사 지적 후 이를 인지하고 통보하였다.

그 결과 개발사업 인·허가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28,054천 원이 감사 종료일(2022. 6. 24.)까지 부과되지 않고 있다.

[표] 생태계보전협력금 사업 인·허가 등 미통보 현황

사업명	사업시행자 (대표자)	위 치	사업규모	부과금액 (천 원)	사 업 인·허가일	비 고
영주시 ㄱ동 대지조성사업	▼▼▼▼(주) (AAA)	영주시 ㄱ동 산171-1번지 등 일원	48,092㎡ (훼손면적 46,758㎡)	28,054	2021.2.18.	전략환경영향 평가 협의 (2020.2.13.)

※ 영주시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영주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생태계보전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따라 대상사업의 통보 등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경 상 북 도

## 주 의 요 구

제 목 산지전용허가(협의) 부적정  
소 관 청 영주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대상 산지에 대하여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그 신청내용이 같은 법 제18조의 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되어 있다.

같은 법 제1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별표 4]의 1호 마목 10)에 따르면 다음(가,나,다,라,마,바)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sup>6)</sup>를 이용하여 산지전용할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6) [별표 4]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제20조제6항 관련)

1. 산지전용 시 공통으로 적용되는 허가기준

허가기준 마.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전용 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세부기준 10)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이용하여 산지전용을 할 것

가) 「도로법」, 「사도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도로관계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시·공고된 후 준공검사가 완료되었거나 사용개시가 이루어진 도로에 따른 도로와 연결된 도로일 것

나) 도로관계법에 따라 고시·공고된 후 공사가 착공된 도로로서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자가 이용에 동의하는 도로

다) 이 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도로관계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을 받아 준공검사가 완료되었거나 사용개시가 이루어진 도로로서 가)에 따른 도로와 연결된 도로

라) 이 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도로관계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을 받아 공사가 착공된 후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도로

(1) 가)에 따른 도로와 연결된 도로일 것

(2)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도로관리자가 도로 이용에 동의할 것

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설치한 도로

바) 도로 설치 계획이 포함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계획상 도로의 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해당 계획상 도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따라서, 영주시 ○○과에서는 산지전용 허가 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에 따라 산지전용 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인 [별표 4]의 1호 마목 10)에 해당하는 도로일 경우 산지전용 허가(협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사무소)로 전용하기 위한 4건의 산지전용허가 신청에 대해 해당 소재지는 신청 당시 주 도로(ㄴ동 511-1번지)와 연결된 진입도로가 없고 옹벽으로 막혀있어 산지전용 허가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현장 출장(2019. 6. 24. / 2019. 7. 2.)으로 알 수 있었음에도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상태라서 통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산지전용허가(협의)를 한 사실이 있다.

[표] 산지전용 허가 내역

수허가자	허가일자	수허가자 주소	산림소재지	전용면적 (㎡)	전용목적	사업종료일	산지구분
AAA(I)	2019.06.25.	영주시 ㄱ로 7, 112/1502	ㄴ동 510-13, 510-14	736	제2종근린생활시설	2021.11.30.	준보전
BBB(H)	2019.07.31.	영주시 ㄱ로 7, 115/1702	ㄴ동 510-12	680	제2종근린생활시설	2022.05.31.	"
CCC(J)	2019.07.31.	영주시 ㄱ로 7, 114/1902	ㄴ동 510-16	667	제2종근린생활시설	2022.05.31.	"
DDD(M)	2019.07.31.	영주시 ㄱ로 7, 115/1702	ㄴ동 510-17	789	제2종근린생활시설	2022.05.31.	"

\* ( )도면상 건축허가 번호

**조치할 사항 영주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경 상 북 도

## 주 의 요 구

제 목 가스, 석유관련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부적정 및 고발 미조치  
소 관 청 영주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영주시 ▲▲▲▲▲과에서는 액화석유가스, 고압가스, 석유 등 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업무와 법령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부적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2조 제1항에 따르면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들은 액화석유가스의 판매시설을 제5조 제5항에 따른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3호 [별표 6]에 따라 충전용기는 항상 40℃ 이하를 유지하여야 하고, 수요자의 주문에 따라 운반 중인 경우 외에는 충전용기와 잔가스용기를 구분하여 용기보관실에 저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허가관청은 제32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 위반행위별 행정처분기준 [별표 8]에 따라 1차 위반의 경우 사업정지 3일 처분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사업의 정지가 수요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4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과징금의 금액을 산정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영주시 ▲▲▲▲▲과에서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2조 위반업체에 대하여 사업정지 3일 또는 이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7)에 따라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위반행위를 한 경우는 [별표 10]의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여야 하나, [별표 9]의 기준을 적용하여 아래 [표 1]과 같이 부적정하게 행정처분한 사실이 있다.

[표 1] 위반업체 행정처분 현황

(단위 : 원)

업 체 명	위반일자	위반사항	처분내용		비고
			정당처분	실제처분	
●●가스	2019.11.13.	허가받지 않은 장소 사무실 운영	사업정지 3일 또는 과징금(779,816)	<b>과징금 480,000</b>	과소부과 (299,816)
●●가스	2019.11.13.	허가받지 않은 장소 용기 보관	사업정지 3일 또는 과징금(202,509)	<b>과징금 210,000</b>	과다부과 (7,491)

##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위반업체 고발 미조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15505호, 2018. 4. 21.)」 제13조에 따르면 사업자들은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의 시설 및 용기 등의 제조시설을 제4조제6항, 제5조제2항, 제5조의3 제2항 또는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별표 4] 1호 가목 7) 나)에서는 충전장소와 그 가스 충전용기 보관장소 사이에는 방호벽을 설치하고, 그 한쪽에서 발생하는 위해요소가 다른 쪽으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규정하여 충전장소와 용기 보관장소를 시설기준에서 구분하고 있고, [별표 4] 1호 나목 1) 나)에서는 충전용기와 잔가스용기, 가연성가스·독성가스 및 산소의 용기는 각각 구분하여 용기보관장소에 놓을 것과, 충전용기는 항상 40℃ 이하의 온도를 유지하고, 직사광선을 받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기술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주시 ▲▲▲▲▲과에서는 고압가스제조(충전) 허가시설인 ■■■■■■

### 7) 과징금 부과기준

- 가) [별표 9] 2015년 7월 29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위반행위를 한 경우
  -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의 연간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
- 나) [별표 10]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위반행위를 한 경우
  - 과징금 부과금액 = 위반사업자 1일 평균매출금액 × 사업정지·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 일수 × 0.18

■이 고압가스용기(튜브트레일러-SiH4)를 관리함에 있어 용기보관장소가 아닌 장소에 용기를 방치하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시설 및 기술기준을 위반하였으므로 사업정지 10일 또는 과징금 부과(800천 원) 및 같은 법 제40조 제3호(벌칙) 규정에 따라 고발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 2]와 같이 ■■■■■■■■■이 고압가스용기를 충전 용기와 잔가스용기로 구분하여 용기 보관장소에 보관하지 않고 주차장에 방치하여 적발 되었음에도 과징금 부과만 하고 고발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 2] 위반업체 행정처분 현황

업 체 명	위반일자	위반사항	처분내용		비고
			정당처분	실제처분	
■■■■■■■■■	2019.9.24.	시설용기의 안전유지 위반	사업정지 10일 또는 과징금(800,000원) 및 고발조치	과징금800,000원 및 고발 미조치	고발 미조치

### 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업체 고발 미조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조, 제14조, 제29조,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1]에 따르면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하여 가짜 석유제품을 보관하거나 판매한 석유판매업자에게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횟수에 따라 ‘사업정지 3개월’(1회 위반)부터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3회 위반)의 행정처분<sup>8)</sup>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영주시 ▲▲▲▲▲과에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을 위반한 주유소(석유판매업자)에 대하여는 그 위반행위에 따라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를 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sup>9)</sup>

8) 행정처분권자는 행정처분기준 제1호 라목을 고려하여 사업정지 기간을 해당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음

9) 일반적으로 타 시·군은 고발 사안일 경우 고발조치 하였음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 3]과 같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을 위반하여 품질기준에 맞지 않은 석유제품을 저장·보관하다가 2차 적발된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만 하고 고발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 3] 위반업체 행정처분 현황

업 체 명	위반일자 (위반횟수)	위반사항	처분내용		비고
			정당처분	실제처분	
□□□□ 주유소	2021.10.26. (1차 위반)	가짜석유 제조 (등유30%혼합)	사업정지 3개월(과징금) 및 고발조치	과징금 26,094천 원 및 고발조치	1/2감경 (모범적 영업)
	2022.1.17. (2차 위반)	가짜석유 제조 (등유5%혼합)	사업정지 6개월 및 고발조치	사업정지 3개월 및 고발 미조치	1/2감경(단순실수) 및 고발 미조치

**조치할 사항 영주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경 상 북 도

## 시 정 요 구

제 목	공장등록 변경사항 지연신청 과태료 미부과
소 관 청	영주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영주시 ■■■■■과에서는 공장의 신설·증설 및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된 사항 중 변경사항에 대해 관리하고 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르면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사항 중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같은 법 제1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6조에 제1항,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하여야 하며,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한 사항 중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 공장부지면적, 공장건축면적, 부대시설면적, 업종, 세부업종변경사항을 변경한 자는 2개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55조 제2항 제6호에 따르면 제16조 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된 사항을 변경한 자에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별표 6]에 따라 공장부지 면적이 3,300㎡ 미만이거나 공장 등 건축연면적이 1,000㎡ 미만인 경우 90만 원(1회 위반 시), 공장부지 면적이 3,300㎡ 이상이거나 공장 등 건축연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100만 원(1회 위반 시)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영주시 目目目目과에서는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된 사항 중 회사명, 대표자 성명, 공장부지면적, 공장건축면적, 부대시설면적 등을 변경한 후 2개월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2019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된 사항 중 회사명, 대표자 성명 등을 변경한 후 2개월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11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표] 공장등록 변경사항 지연 신청 과태료 미부과 현황

(단위 : 천 원)

회 사 명	변경사항	변경사유일자	법적 신청기한	변 경 일	지연기간	과태료 미부과
합 계	11건					10,300
▼▼▼▼▼ 영농조합법인	대표자	2015.03.24.	2015.05.23.	2020.01.16.	79개월	900
		2018.01.26.	2018.03.25.	변경미등록	51개월	900
		2020.09.01.	2020.10.31.	2020.12.09.	1개월	900
(주)△△△△	회사명	2019.12.26.	2020.02.25.	2020.04.08.	1개월	900
영농조합법인 ●●●●	대표자	2013.01.21.	2013.03.20.	2020.04.28.	85개월	1,000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	대표자	2019.12.27.	2020.02.26.	2020.12.22.	9개월	900
(주)○○○○○○	대표자	2021.04.02.	2021.06.01.	2021.06.10.	9일	1,000
농업회사법인 ■■■■ 주식회사	대표자	2020.11.11.	2021.01.10.	2021.08.11.	7개월	1,000

회 사 명	변경사항	변경사유일자	법적 신청기한	변 경 일	지연기간	과태료 미부과
○○○○	대표자 및 회사명	2021.06.18.	2021.08.17.	2021.09.27.	1개월	900
●●●●	회사명	2021.08.13.	2021.10.12.	2022.02.22.	4개월	900
주식회사 ◇◇◇◇◇◇	대표자 주소	2021.10.08.	2021.12.07.	2022.03.21	3개월	1,000

※ 영주시 제출자료 재구성

### 조치할 사항 영주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② 미부과된 과태료 10,300천 원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경 상 북 도

## 시 정 요 구

제 목 농어촌민박사업 사후관리 부적정  
소 관 청 영주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영주시 ▽▽▽▽과에서는 농어촌 지역의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지역 소득증대와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이 직접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민박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수리 및 사후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6호 라목,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별표 3]에 따르면 농어촌민박사업이란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연면적 230㎡<sup>10)</sup> 미만의 주택을 이용하여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같은 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내용 변경 시에도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88조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농어촌민박사업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 그 시설 및 운영 개선을 명하도록 되어 있고, 제89조에는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제81조 제2항에 따른 규모나 시설 기준을 위반한 경우 사업장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리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제132조에는 제86조를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어촌민박사업을 하거나 제88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0) 단독주택이 여러 동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동일지번에 포함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하나의 농어촌민박으로 신고가 가능하나 부속용도 및 부속건축물을 포함한 전체 단독주택의 연면적 합계가 230㎡를 미만이어야 함

또한, '19. 7월 개정된 「2019년 농어촌민박사업 시행지침」 사후관리 이행 점검 항목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반기 1회 이상 농어촌민박의 규모, 위생, 소방 안전 및 시설기준 준수, 용도변경, 민박사업자 거주 여부 등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연 1회 이상 소방서, 위생 담당기관 및 부서, 건축 담당부서 등 관련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부서에서는 반기 1회 이상 농어촌민박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연 1회 이상 관련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당초 신고된 내용과 달리 시설기준 등을 위반하여 운영 중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영주시 ▽▽▽▽과에서 2021. 9월 초 ■■■경찰서의 하천법 위반 관련 협조 요청으로 ■■■경찰서 ○○과와 함께 현장확인 시 ◆◆펜션, ■■■■■ 민박이 시설규모를 위반하여 운영되고 있고, 미신고된 민박도 같이 운영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등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또한, 감사기간 동안 영주시 농어촌민박 84개소에 대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운영현황을 점검한 결과 [표 1]과 같이 연접한 여러 채의 단독주택을 각각 개별로 농어촌민박사업 신고를 한 후 예약·정산 홈페이지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등 여러 채를 1개의 민박으로 영업하고 있으며, [표 2]와 같이 당초 신고내용과 다르게 객실 수 및 면적을 초과하여 운영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 1] 농어촌민박 집단시설 운영현황

상호	지정일자	소재지	운영자	홈페이지	실제운영자	비고
◆◆펜션	2019.03.11.	영주시 톨동 톨로358번길 25	○○○	http://◇◇.co.kr/	◆◆펜션 대표 ○○○	미신고 민박 운영
■■■■■	2019.03.04.	영주시 톨동 톨로358번길 51	■■■	미운영		
▼▼▼▼	2020.01.09.	영주시 ◀읍 ▶로 258-7	□□□	http://www.◇◇.kr/	▼▼▼▼ 대표 □□□	
△△△	2020.02.17.	영주시 ▶읍 ▶로 258-3	▣▣▣	미운영		
◀◀◀	2018.08.01.	영주시 ◀면 ◀로535번길 65-24	≡≡≡	https://blog.naver.com /◇◇	◀◀◀ 대표 ≡≡≡	
▣▣▣ ▣▣▣	2021.03.22.	영주시 ▣면 ▣로 30번길 9	▣▣▣	미운영		

[표 2] 농어촌민박 신고내용 위반 현황

(단위 : 실, m<sup>2</sup>)

민박명칭	지정일자	민박소재지	운영자	변경 미신고 현황 객실 수(면적)			비고
				신청	실제	초과	
합 계		19개소					
AAAAA	2006.05.01	영주시 ▶면 ▶로 298번길 35-1	▣▣▣	3(82.64)	5(82.64)	2(0)	
BBBBB	2009.12.16.	영주시 톨면 톨로 257	▣▣▣	1(66.7)	2(135.17)	1(68.47)	
CCCCC	2010.05.31.	영주시 ▶면 ▣로 106번길 6-55	▣▣▣	3(166.82)	7(166.82)	4(0)	
DDD DDD	2013.05.10.	영주시 ▶면 ▶로 243번길 37-13	▣▣▣	3(163)	4(163)	1(0)	
EE민박	2014.07.29.	영주시 ■읍 ■로 68	⊖⊖⊖	2(147.77)	5(228.36)	3(80.59)	
FFFF민박	2015.03.25.	영주시 ■면 ■로 871	⊖⊖⊖	2(144)	6(144)	4(0)	
GGGGG	2017.01.24.	영주시 ■읍 ■로 215	⊖⊖⊖	2(99.64)	5(146.07)	3(46.43)	
HHHHH	2017.07.06.	영주시 ◻면 ◻로 368번길 8-6	⊖⊖⊖	2(104.24)	3(104.24)	1(0)	
JJ민박	2017.07.31.	영주시 ■읍 ■로479번길 83	▽▽▽	1(90.64)	2(122.84)	1(33.2)	
KKK	2018.03.20.	영주시 ▶면 ▣로890번길 86	▽▽▽	1(48.87)	2(97.74)	1(48.87)	
LLL	2018.08.01.	영주시 ◆면 ◆로535번길 65-24	≡≡≡	1(73.51)	2(73.51)	1(0)	‘▣▣▣ ▣▣▣’와 홈페이지 같이 운영
MMMMM	2018.08.24.	영주시 ◆면 ◆로 442	◀◀◀	1(67)	4(133.1)	3(66.1)	
■■■■■	2019.03.04.	영주시 톨동 톨로358번길 51	■■■	3(228.94)	5(256.42)	2(27.48)	홈페이지

민박명칭	지정일자	민박소재지	운영자	변경 미신고 현황 객실 수(면적)			비고
				신청	실제	초과	
◆◆펜션	2019.03.11.	영주시 민동 □로358번길 25	○○○	3(229)	6(283.96)	3(54.96)	같이 운영
▼▼▼▼	2020.01.09.	영주시 ■읍 ■로 258-7	□□□	4(224.28)	4(224.28)	0	홈페이지 같이 운영
△△△	2020.02.17.	영주시 ■읍 ■로 258-3	■□■	1(210.59)	1(210.59)	0	
NNNNN NNNNN	2020.04.03.	영주시 ◀면 ○로1046번길 125-36	◀◀◀	1(197.13)	2(197.13)	1(0)	
■■■■ 바바바	2021.03.22.	영주시 ⊕면 ⊕로 30번길 9	▣▣▣	2(170.23)	2(170.23)	0	‘◀◀◀’와 홈페이지 같이 운영
YYYY	2022.02.10.	영주시 ■읍 ■로 22	◆◆◆	3(145.75)	5(145.75)	2(0)	

\* 영주시 제출자료 재구성

### 조치할 사항 영주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시설기준을 초과하여 운영하고 있거나 미신고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농어촌민박  
사업자에 대해서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경 상 북 도

## 시 정 요 구

제 목 농지개간사업 및 산지전용 허가업무 사후관리 부적정  
 소 관 청 영주시  
 관 계 부 서 〇〇과, 〇〇과  
 내 용

영주시 〇〇과에서는 임야 등 농지조성에 적합한 토지로서 농지로 이용되고 있지 않은 토지를 농지로 조성하고 그 부대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개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 인가 및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〇〇과에서는 산지전용 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시 □구 ■■로248번길 54-1, AAA은 임야를 농지(전)로 조성하여 토지의 이용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표 1]과 같이 건설과에 영주시 □□읍 〇〇리 산51-1번지 51,266㎡에 대한 개간사업 승인을 신청하여 2019. 10. 28. 시행계획을 승인받았다.

[표 1]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내역

허가위치				사업면적 (㎡)	사업기간		사업시행자		비고
읍면동	지번	지목	지적(㎡)		당 초	변 경	성 명	주 소	
□□읍 〇〇리	산51-1	임	95,662	(당초) 51,266 (변경) 50,721	2019.10.31. ~ 2020.10.30.	2019.10.31. ~ 2021.10.30.	AAA	□□□□시 □구 ■■로248번길 54-1	

그리고 [표 2]와 같이 〇〇과에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여 2019. 10. 23. 전용을 허가받아 현재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2] 산지전용 허가내역

산지소재지		변경 내역					비고	
소재지	지 번	지적 (㎡)	허가 면적 (㎡)	목적	허가기간			수허가자
					당 초	변 경		
읍 리	산51-1	95,662	51,266	개간	2019.11.01. ~ 2020.10.31.	2019.11.01. ~ 2021.10.30.	AAA (시 구 로248번길 54-1)	

### 1. 농지개간사업 및 산지전용 허가업무 사후관리 부적정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4호, 제5호에서는 농수산업을 주목적으로 개간하는 농지확대 개발사업을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정의하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농어촌정비사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같은 법 제9조 및 제116조에 따르면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승인받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농어촌정비사업을 계속 시행하기가 불가능하거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행계획이나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원상회복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7조 및 제54조에 따르면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산지전용 기간 이내에 전용하려는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으면 산지전용 기간의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39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완료하였거나 그 산지전용 기간 등이 만료된 경우 산지 복구 기간 등이 포함된 산지복구설계서를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산지를 복구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8조 및 제41조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려는 자는 미리 토사유출의 방지조치, 산사태 또는 인근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산지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 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산림청장 등에게 예치하도록 되어 있고, 복구의무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승인받은 복구설계서의 복구기간 내에 복구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행자를 지정하여 복구를 완료하게 하거나 대집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영주시에서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사업기간 내에 준공하지 못하고 사업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개간사업 승인을 취소하거나 산지 복구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과에서는 사업시행자 AAA이 개간사업을 추진하면서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복구비 예치금액을 마련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사업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관련 법령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만료일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난 2022. 4. 21. 개간사업 기간 연장을 승인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그리고 ○○과에서는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AAA이 산지전용 허가기간 만료 시점인 2021. 10. 28. 제출한 복구설계서의 복구기간 내에 복구를 완료하지 않았음에도 복구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만료일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난 2022. 4. 12. 산지전용허가 기간을 연장 처리하여 산지전용허가지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 2. 국유지(구거) 무단 사용 관리·감독 소홀

「국유재산법」 제7조에서는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조에서는 국가 외의 자는 국유재산에 건물, 교량 등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과에서는 영주시 ㉠읍 ㉠리 산51-1번지에 대한 개간사업 승인 및 연장승인을 추진하면서 진입도로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연접 부지인 영주시 ㉠읍 ㉠리 809-8번지, 국유지(구거, 농림부 소유)에 대해 관련 부서에 사전 사용 협의를 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사전 협의 없이 사업을 승인하였다.

그리고 감사기간 중 현장 확인한 결과, 해당 국유지가 진입도로로 포장되어 사용되는 등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위 부서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감사일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개간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조치할 사항 영주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국유지 무단 사용에 대해서는 변상금 징수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경 상 북 도

## 시 정 요 구

제 목 개발행위 허가업무 사후관리 부적정  
소 관 청 영주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시 □구 ■■로248번길 54-1, AAA 및 영주시 □□읍 ◀◀로 70, BBB는 농지조성을 위해 허가과에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를 신청하여 [표]와 같이 개발행위를 허가받았다.

[표] 개발행위 허가내역

신청인	소재지	지번	지목	허가면적 (㎡)	사업목적	사업기간	비고
AAA	□□읍 ○○리	36-3 외 3	전, 답	9,900	우량농지 조성	당초)2018.10.10.~2019.10.9. 변경)2018.10.10.~2020.10.9.	
BBB	□□읍 ○○리	37, 412	전	2,122	성토 후 전으로 사용	2020.4.7.~2021.4.6.	

### 1. 개발행위 허가업무 사후관리 부적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기간 내에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경우 허가 취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과는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허가받은 사업기간 동안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허가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허가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사업시행자 AAA이 신청한 개발행위 기간이 2019. 10. 9. 만료되었음에도 허가 취소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만료일이 지난 2019. 10. 21. 허가기간 연장을 승인하였다.

또한, 사업시행자 BBB의 경우 허가기간이 2021. 4. 6.까지로 개발행위허가 기간이 감사일 현재 15개월이 경과되었는데도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2. 국유지(구거) 무단 사용 관리·감독 소홀

「국유재산법」 제7조에서는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조에서는 국가 외의 자는 국유재산에 건물, 교량 등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과에서는 영주시 ㅁㅁ읍 ◎◎리 37, 412번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하면서 사업시행자 BBB의 신청서류 및 건설과의 사전 검토의견에서 연접 부지인 영주시 ㅁㅁ읍 ◎◎리 809-8번지, 국유지(구거, 농림부 소유)의 무단 사용계획을 알 수 있었음에도 국유재산에 대한 사전 협의 없이 허가한 사실이 있다.

그리고 위 부서에서 사업 기간 중 국유지 무단 사용 사실을 발견하여 복구 조치하였으나, 우수 피해예방을 위한 배수로 등은 감사일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등 개발행위 허가지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조치할 사항 영주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② 개발행위 허가기간이 경과된 사업시행자 및 국유지 무단 사용자에 대해서는  
변상금 징수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경 상 북 도

## 주 의 요 구

제 목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제한지역 내 건축허가 협의 부적정  
소 관 청 영주시  
관 계 부 서 ■■■■■소  
내 용

영주시 ■■■■■소는 아래 [표 1]과 같이 건축협의 신청 건에 대하여 2019. 9. 23. 허가과로 협의 회신 처리를 하였다.

[표 1] 건축협의 신청 내역

건축주 (대지위치)	신청일	면적(m <sup>2</sup> )	용도지역(구역)	용도	비고
영주시 (◆◆면 ■■■리 131-5)	'19.9.17	4,097	계획관리지역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지역)	제2종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	미생물배양시설 및 실험실 등

「건축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4호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하려면 해당 용도·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56조부터 제62조까지 및 제76조부터 제82조까지의 규정과 그 밖에 관계 법령의 규정에 맞는지를 확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수도법」 제7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르면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0km이내 지역에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sup>11)</sup>을 설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1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는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 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공장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 및 시험생산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르면 공장설립 승인지역의 범위는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7km를 초과하는 지역과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4km 초과 7km이내인 지역으로서 「하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하천 등으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 제2호 [별표2]<sup>12)</sup>에 따르면 공장설립승인지역에서 영위할 수 있는 제조업의 범위를 곡물 도정업, 떡류 제조업, 장류 제조업 등 오폐수의 발생량이 적은 9개 제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공장설립제한지역에서는 상수원의 수질 보호를 위해 제조업시설 설립이 제한되며, 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영주시 ■■■■소에서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 건축협의 신청 건에 대하여 공장설립 제한·승인지역 토지조서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수도법」에 의거 “공장”인지 확인 후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공장설립제한지역에서 건축될 수 없는 제조시설이라는 검토의견으로 회신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영주시 ■■■■소에는 ○○과로부터 [표 1] 내용의 건축허가 협의 문서를 접수하고 협의 대상 건축물인 미생물 배양 제조시설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분류코드 : 21102)으로 고시되어 있음에도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화학제품 제조업(분류코드 : 20499)’의 제외 대상에 미생물용 조제 배양제 제조(21102)가 포함된다는 이유로 「수도법」 제7조의2의 “공장”이 아니라고 자의적인 판단을 하여, 공장설립제한지역에 건축될 수 없는 제조시설 해당 여부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았다.

12) 공장설립승인지역에서 영위할 수 있는 제조업의 범위에는 곡물 도정업, 떡류 제조업, 빵류 제조업, 코코아 제품 및 과자류 제조업,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식품 제조업, 장류 제조업, 커피 가공업, 차류 가공업, 인삼제품 제조업

그 결과, ■■■■소에서는 「수도법」과 관련한 제조시설 건축 가능 여부에 대해 협의할 내용이 없다고 판단하여 관련 협의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아래 [표 2]와 같이 2019. 9. 23. ○○과로 협의 회신하여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공장설립제한지역에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제조시설을 입지하게 한 사실이 있다.

[표 2] 수도사업소 건축허가 협의 회신 내용

검토의견 회신내용		접수문서	회신문서
상수원	·수도법 제7조제3항에 의거 가축분뇨를 버리는 경우 동법 제8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임	○○과-24650 (2019.9.20.)	■■■■소-12056 (2019. 9. 23.)
상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수도 급수 가능 지역임</li> <li>· 신규급수공사는 원인자(건축주)가 공사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수도사업소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li> <li>· 신규급수신청 및 등록을 아니하고 무단으로 기존 수도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수도시설을 설치 및 변조할 경우 「수도법」 제20조 및 「수도법」 제83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임</li> <li>· 상수도 급수신청에 따른 사유지가 편입될 경우 원인자(건축주)가 편입부지를 해결하여야 함</li> <li>· 지방상수도를 공급할 경우 「수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건축주는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수도법」 제87조 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됨</li> </ul>		

**조치할 사항 영주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경 상 북 도

## 주 의 요 구

제 목 계약보증금 세입 조치 업무 등 처리 부적정  
 소 관 청 영주시  
 관 계 부 서 ■■■■소  
 내 용

영주시 ■■■■소에서는 ‘영주시 주변 ▼▼지구 △△△△ 정비공사’를 아래 [표 1]과 같이 추진 중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공사 계약 해지하였다.

[표 1] 공사 계약 해지 현황

공 사 명	사업량	도급액 (천 원)	공사기간	계약해지일	도급자	계약 해지사유	비고
영주시 주변 ▼▼지구 △△△△ 정비공사	오수관로 정비 L=393m	165,555	‘18.04.24. ~ ’19.07.04.	‘19.05.24.	(주)○○○○○ (◀◀◀)	계약상대자 공사 포기각서 제출	

### 1. 선금 지급 시 채권확보 업무 부적정

위 부서에서는 ‘영주시 주변 ▼▼지구 △△△△ 정비공사’에 대한 선금을 아래 [표 2]와 같이 지급하였다.

[표 2] 선금 지급 현황

공 사 명	선금지급액 (천 원)	선 금 지급일	선 금 보증기간	공사 기간 (준공예정일)	공사 일시정지	선 금 보증기관	비고
영주시 주변 ▼▼지구 △△△△ 정비공사	69,000	‘18.05.23.	‘18.05.23. ~ ’18.12.19.	‘18.04.24. ~ ’18.10.20. (정지 해제 후 ’19.07.04.)	‘18.06.14. ~ ’19.02.26.	ㄱㄴㄷ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1호, 2018. 1. 22.)」 제 6장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선금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전 또는 기성 대

가지급 전에 미리 그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공사, 제조 및 용역계약에 있어서 해당 계약의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할 수 있게 계약체결 후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선금을 지급할 경우 채권확보를 위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입찰보증금) 제2항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되, 선금에 대한 보증·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사업변경 등의 사유로 그 이행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초의 보증·보험기간에 그 연장하려는 기간을 가산한 보증·보험기간으로 증권·보증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영주시 ■■■■소에서는 선금을 지급할 때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받아 그 보증기한이 정당한지 확인한 후 지급하고, 선금을 지급한 사업의 이행 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 연장하려는 기간을 가산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선금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위 부서에서는 ‘영주시 주변 ▼▼지구 ▲▲▲▲ 정비공사’ 추진 중 공사 일시정지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선금금 보증서(보증기간 : 2018. 5. 23. ~ 12. 19.)의 보증기간이 연장된 공사기간 중에 만료되는 상황에서 보증기간 만료 전에 보증기간을 연장한 기간만큼 가산한 증권·보증서를 제출받아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공사 준공 전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sup>13)</sup>로 2019. 5. 24.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지급한 선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게 되는 등 재정 손실이 우려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다만, 공사담당자인 지방■■■■■■■■■■■■■■■■■■(현 ⊕⊕과, 지방■■■■■■■■■■■■■■■■■■)은 계약담당자를 대신하여 선금 반환을 위해 선금 반환 요청 공문을 계약상대자[(주)○○○○○]와 (2019. 4. 10.) 선금 보증사인 기니디(2019. 4. 29.)에 발송하고, 계약상대자 사무실 출장 방문(2019. 4. 10.), 기니디 출장 방문(2019. 4. 19., 2019. 4. 29.) 등을 통해 2019. 5. 10. 기니디으로부터 선금 보증기간 만료로 인해 회수 불가능한 선금 70,475천 원(이자 포함)

13) 회사 내부사정(자금 운용 곤란)으로 인한 공사 추진 불가

을 반환받았다.

## 2. 계약보증금 세입 조치 처리 업무 부적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하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주시 ◻◻◻◻소에서는 ‘영주시 주변 ▼▼지구 △△△△ 정비공사’ 계약 시 아래 [표 3]과 같이 ㄱㄴㄷ에서 발급한 계약보증서(보증기간 : 2018.4.18.~10.20.)를 첨부하여 계약을 완료하였고, 계약보증 약관(국가 등 채권자용) 제4조(실제 이행 기일까지 보증책임)에 따르면 ‘보증채권자와의 보증 계약은 앞면(계약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행 기일까지 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계약보증서상의 보증기간인 2018. 10. 20.이 경과하였더라도 공사 완료일까지 계약보증금 회수가 가능하였다.

[표 3] 공사 계약보증서 현황

공 사 명	계약금액 (천 원)	계약보증금 (천 원)	보증기간 (이행 기일)	공사 기간 (준공예정일)	공사 일시정지	보증기관	비고
영주시 주변 ▼▼지구 △△△△ 정비공사	165,555	24,833	‘18.04.18. ~ ’18.10.20. (‘19.07.04.)	‘18.04.24. ~ ’18.10.20. (‘19.07.04.)	‘18.06.14. ~ ’19.02.26.	ㄱㄴㄷ	

한편, 해당 공사를 추진하던 중 위 부서에서는 공사 이행 정도가 부진하여 계약상대자인 (주)○○○○에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하였으나, (주)○○○○이 내부사정(자금운용 곤란)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공사 포기각서를 제출하자 이를 접수하였다.

따라서 영주시 ◻◻◻◻소에서는 (주)○○○○이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계약보증금을 영주시로 세입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계약보증금 청구 포기 합의를 2019. 5. 1. ㄱㄴㄷ에 제출하여 계약보증금 24,833천 원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다만, 공사담당자인 지방■■■■■■■■ □□□(현 ⊕⊕과, 지방■■■■■■■■)은 계약담당자를 대신하여 계약보증금 세입 조치를 위해 보증사인 ㄱㄴㄷ 출장 방문(2019. 4. 29.) 시 보증기간 만료로 회수 불가능한 선금 70,475천 원(이자 포함)의 반환을 위해서는 영주시의 계약보증금 청구 포기 합의서가 필요하다는 ㄱㄴㄷ의 의견에 따라 계약보증금보다 금액이 큰 선금 회수를 위해 계약보증금 청구 포기 합의를 작성·제출하여 선금을 회수 받았다.

#### 조치할 사항 영주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경 상 북 도

## 시 정 요 구

제 목 ○○소하천 정비공사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영주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영주시 ○○과에서는 ‘○○소하천 정비공사’를 아래 [표 1]과 같이 추진하고 있다.

[표 1] 공사 현황

공 사 명	사업량	총 공사비 (천 원)	계약일	공사기간	도급회사	비고
○○소하천 정비공사	L=5.26km	8,712,699	'21.03.23.	'21.04.01. ~ '24.03.30.	(주)◀◀ (○○○)	

### 1. 소하천정비시행계획 미수립 등

「소하천정비법」 제6조, 제7조,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소하천 관리청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소하천 등 정비 방향의 지침이 될 소하천정비종합계획<sup>14)</sup>을 10년 마다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5년 마다 종합계획에 따른 소하천정비중기계획<sup>15)</sup>을 수립하여야 하며 중기계획에 따라 소하천 등 정비를 시행하려면 소하천정비시행계획<sup>16)</sup>(이하 "시행계획")을

- 14)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는 1.소하천 등 정비에 관한 기본 방침, 2.수계별 소하천망의 구성, 3.재해 예방 및 환경 개선과 수질 보전에 관한 사항, 4.소하천 등의 다목적 이용과 주민 소득 증대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5) 소하천정비중기계획에는 1.정비사업의 연도별 계획, 2.연도별 재원조달 대책, 3.소하천 등 정비의 효과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6) 소하천정비시행계획에는 1.시행계획의 개요, 2.소하천별 세부 정비 시행계획(가.정비사업의 명칭, 나.정비사업의 목적 및 개요, 다.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의 명칭 및 주소, 라.정비사업의 착공 및 준공 예정 연월일, 마.수용하거나 사용할 다음의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등의 명세, 바.정비사업 시행지역의 위치도, 사.실시설계도서, 아.예정 공정표, 자.사업비 및 자금의 조달계획서, 차.준공된 소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카.발생 예상 폐천부지(廢川敷地)의 면적, 타.자연친화적인 소하천등 정비에 관한 사항 등 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파.소하천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9조, 제20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으며,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제21조에 따르면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의 정비사업은 사업 인정이 의제되는 사업으로 공익사업의 허가·인가·승인권자 등은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사업계획 승인 등을 하려는 경우 토지보상법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부서에서는 ‘○○소하천 정비공사’를 추진하면서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고, 「토지보상법」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영주시 ⊕⊕과에서는 ‘○○소하천 정비공사’를 추진하면서 시행계획을 미수립하였을 뿐만 아니라, 토지보상법 제21조에 따른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하지 않아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될 우려가 발생하였다.

## 2.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개발사업 승인사항 미통보

「자연환경보전법(제15839호, 2019. 4. 17.)」 제46조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자연자산을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징수한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제47조에 따르면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의 인·허가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그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의 규모, 생태

계 및 토지의 용도별 훼손면적 등을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도지사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생태계 보전협력금의 부과금액·납부기한 등에 관한 사항을 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사업의 승인부서인 영주시 ㉠㉠과에서는 「자연환경보전법」 제47조 규정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의 인·허가 또는 승인 등을 한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의 규모, 생태계 및 토지의 용도별 훼손면적 등을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징수 기관인 경상북도에 통보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소하천 정비공사’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을 수립하지 않음으로써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를 위한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의 규모, 생태계 및 토지의 용도별 훼손면적 등을 통보하지 않아, 아래 [표 2]와 같이 생태계보전협력금 10,324천 원을 부과·징수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2] 생태계보전협력금 미통보 현황

(단위 :㎡, 천 원)

사업명	공사기간	위 치	소규모환경 영향평가 협의 회신일	생태계보전협력금		비고
				승인면적 (부과대상면적)	부과금액	
○○소하천 정비공사	‘21.04.01. ~ ‘24.03.30.	영주시 ㄱ면 ㄴ리~ ㄷ면 ㄹ리 일원	‘20.2.19.	61,417 (50,295)	10,324	

### 3. 식생옹벽블럭 속채움 다짐 미실시 등 공사감독 소홀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987호, 2020. 12. 16.)」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도록 하고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등 건설공사를 관리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공사감독자의 업무 내용에 따른 감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4. 계약담당자의 주의사항’ ‘나’항(‘제2절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6. 예정가격조서의 작성’)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예정가격 작성 당시의 관련 법령 및 원가계산 자료를 적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르면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그 밖에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설표준품셈, 각종 제시방서 및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다 계상되어 있는 공정은 설계를 변경하여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영주시 ㉠㉠과에서는 “●●소하천 정비공사”를 추진하면서 건설사업자가 설계도서에 반영되어 있는 식생옹벽블럭 속채움 및 다짐 공종 중 램머 다짐 미실시, 가시 설 화타빼기 미설치, 현장사무실 기타 잡공사 반영 등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시공하지 않았는데도 공사비 47,391천 원을 감액 변경하지 않고 공사를 추진하는 등 공사감독 업무 수행을 소홀히 하였다.

### 조치할 사항 영주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관련 법령에 따라 소하천정비시행계획 수립,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 이행, 생태계 보전협력금(법률 개정 이후 부담금) 부과대상 통보를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③ 과다 계상된 사업비 47,391천 원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감액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경 상 북 도

## 주 의 요 구

제 목 ○○ ○○○○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영주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영주시 ○○과에서는 ‘○○ ○○○○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아래 [표 1] 과 같이 추진하고 있다.

[표 1] 용역 현황

용역명	사업량	용역비 (천 원)	계약일	용역기간	용역사	비고
○○ ○○○○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식	481,300	‘20.06.17.	‘20.06.19. ~ ‘20.12.15. (용역 일시정지 ‘20.11.10.)	(주)○○○○○ (○○○○) 외 2개사	

### 1. 지방재정 투자심사 추진 부적정

「지방재정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119호, 2019. 5. 17)」 (이하 ‘심사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 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을 편성하려면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국가의 장기계획 및 경제·사회정책과의 부합성, 중·장기 지역계획 및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 소요자금조달 또는 원리금 상환능력, 재정·경제적 효율성 등, 일자리 창출효과 등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심사규칙 제3조에 따르면, 시·군의 사업비(용역비 등 각종 부대경비를 포함한다) 60억원 미만의 신규 투자사업과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지방채를 제외한다.)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신규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시·군 자체 투자심사를 하여야 하며, 시·

군의 사업비 60억원이상 20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시·도 의뢰 투자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심사규칙 제4조에 따르면, 투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해당 사업계획 수립 후 기본설계 용역 전(기본설계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용역 전을 말한다)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주시 ㉠㉠과에서는 2018. 9. 20. 영주시 도시경관 전략계획에 ‘○○○ ○○○○○ 조성사업’을 자체재원(시비)으로 추진하는 것을 반영하였고, 2019년 본예산에 ○○○ ○○○○○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00,000천 원을 반영하여 아래 [표 2]와 같이 “○○○ ○○○○○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2019. 10. 24. 영주시 자체 투자심사를 진행하여 조건부 추진(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후 추진)으로 투자심사를 완료하였다.

[표 2]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현황

용역명	사업량	용역비 (천 원)	계약일	용역기간	용역사
○○○ ○○○○○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1식	19,632	‘19.05.30.	‘19.06.04. ~ ‘19.11.11.	(주)◇◇◇◇◇◇◇◇◇◇ (■ ■ ■ ■, □ □ □ □)

그런데 2020. 2. 12. 경상북도는 낙후지역 발전 전략사업(변경)에 ○○○ ○○○○○ 조성사업을 반영하여 경상북도 낙후지역 발전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sup>17)</sup>하였다.

따라서 위 부서에서는 ○○○ ○○○○○ 조성사업이 자체재원 사업에서 도비 지원사업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 제4조, 제6조에 따라 시·도 의뢰 투자심사를 해당 사업의 실시설계 용역 전에 이행하여야 했다.

그러나 위 부서에서는 해당 사업의 실시설계 용역 전에 투자심사를 완료하지 않고, 2020. 2. 17. ○○○ ○○○○○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 2020. 4. 24. 사업수행능력평가 위원회를 개최한 후, 2020. 6. 19.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21. 5. 26. 경상북도로 2021년 정기 제3차 투자심사 의뢰하여 경상북도 ○○○○관

17) 최종 확정 시 사업명은 ‘영주 ◇◇◇◇ 조성사업’, 총 사업비 75억원(도비 25억원, 시비 50억원)

-1004호(2021.8.10.)에 따라 지방재정 투자심사 결과 재검토<sup>18)</sup>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다.

또한, 「문화재보호법」 제35조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로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1항 제3호 국가지정문화재,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안에서 하는 건축물 또는 도로·관로·전선·공작물·지하구조물 등 각종 시설물을 신축·증축·개축·이축 또는 용도 변경하는 행위,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토지 및 수면의 매립·간척·땅파기·구멍뚫기, 땅깍기, 흙쌓기 등 지형이나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등을 할 때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위 부서에서는 ‘○○ ○○○○ 건설사업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ㄱ동 ○○○○○) 현상변경 허가 신청[○○과-8723호(2021.8.19.)]’ 및 ‘○○ ○○○○ 건설사업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 신청[○○과-8838(2021.8.24.)]’을 하였으나 문화재청으로부터 국가지정문화재(ㄱ동 ○○○○○) 현상변경 허가신청 불허 알림<sup>19)</sup> 통보[문화재청 ○○○○○과-4664호(2021.9.17.)]를 받았다.

이에 따라 위 부서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설계용역을 계약 해지하고 사업 중단 및 향후 ○○ ○○○○ 건설에 따른 도심 랜드마크 필요성 공감에 대한 시민들의 여론 형성과 예산확보 상황 등을 신중히 검토 후 재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하였다.

그 결과 아래 [표 3]과 같이 ○○ ○○○○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318,600천 원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18) 재검토 내용은 주민들 수요조사서 제시, 주민 의견(공청회 또는 설명회) 수렴 필요, 보행교 설치 후 잠수교 활용 방안 검토 등임.

19) 허가 신청 사항이 역사문화경관 저해 우려가 있어 문화재보호법 제36조(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불허 통지하며, 이는 우리 거래의 예지와 숨결이 깃들여 있는 문화재를 주변 환경과 함께 잘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주고자 불가피하게 취한 조치임을 사유로 불허가 통보함.

[표 3] 용역비 기성금액 현황

용역명	용역비 (천 원)	전체 공정률	기성금액 (천 원)	용역기간	용역사	비고
○○ ○○○○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481,300	80%	318,600	‘20.06.19. ~ ‘20.12.15. (용역 일시정지 ‘20.11.10.)	(주)◀◀◀◀ (□□□) 외 2개사	

※ 영주시 제출자료 참고 작성(용역 전체 공정률은 용역기간 대비 공정률임)

## 2. 용역 일시정지 등 용역계약 관리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4호, 2020. 6. 15.)」에 따르면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용역수행이 지체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 연장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 계약담당자는 용역수행이 계약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밖에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따른 용역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에 초과 일수 1일마다 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잔여계약금액×초과일수×대출금리, 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준공대가 지급 시 지급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등에 따르면 용역에 참여한 건설기술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기술경력(참여사업명 및 기간, 기술 부문, 전문 분야 등)을 확인받아야만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 경력을 신고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따라서 영주시 ○○과에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아닌 인허가 승인·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용역을 정지하여 계약상대자가 해당 용역수행 실적을 장기간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 ○○○○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

행하면서 ‘●●●● 디자인 결정 협의 지연’ 사유로 용역을 일시정지하여 계약기간 내에 해당 용역을 완료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2020. 11. 10.부터 현재까지 용역을 전부 일시정지 시킨 채 실시설계 용역 4차 보고회 개최(2021. 1. 27.), 특정공법 기술제안서 1차 평가(2021. 4. 1. ~ 4. 5.), 특정공법 기술제안서 2차 평가(2021. 7. 21. ~ 7. 27.),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2021. 8. 19.) 등 계약상대자에게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그 결과 해당 용역을 수행한 기간과 참여한 건설기술자 등이 관리되지 못하여 정확한 지연배상금 산출 및 건설기술자 기술경력(용역수행 실적)을 인정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조치할 사항 영주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경 상 북 도

## 시 정 요 구

제 목 ○○○면 ○○○리 양수장 설치공사 부적정  
소 관 청 영주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영주시 ○○○과에서는 ‘○○○면 ○○○리 양수장 설치공사’를 아래 [표 1]과 같이 추진하였다.

[표 1] 사업 현황

공사명	사업량	사 업 비(백만 원)			계약일	사업기간	도급자	비고
		계	도급	관급				
○○○면 ○○○리 양수장 설치공사	송 급수관로 설치 L=21km	4,394	2,946	1,448	2019. 12.20.	2019.12.26 ~ 2022.06.16.	(주)▲▲▲▲ 대표 ♀♂♂♂	공정률 100%

### 1. 설계변경 검토 및 처리 부적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공사의 계약은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0호, 2019. 10. 8.)」에 따르면 공사의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기준에 따르면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설계변경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설계변경은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특정 공종의 삭제, 공정계획의 변경, 시공방법의 변경, 그 밖에 공사의 적절한 이행을 위한 변경에 한하여 설계 변경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농업용수 급수구역(송수관로, 급수관로, 배수지 등)이 추가되는 공사일 경우 별도의 공사로 일반경쟁입찰에 부쳐 발주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영주시 ㉠㉠과에서는 ㉡㉡면 ㉢㉢리 양수장 설치공사를 시행하면서 2020. 7. 6. 1차 설계 변경 시 4호라인 급수구역(송수관로, 급수관로, 물탱크 등)을 가시설 시트파일 천공수량 누락, 집수매거 가설도로 수량 누락 등 사업비 조정으로 장래분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제외<sup>20)</sup>하였으므로, 향후 예산을 확보하여 4호라인 급수구역 사업 추진 시 별도의 공사로 일반경쟁입찰에 부쳐 발주하여야 함에도 사업관리가 용이하다는 사유 등으로 2021. 6. 17. 6차 설계 변경 시 579,582천 원(도급액 305,450천 원, 관급액 274,132천 원)을 증액하였다.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일반경쟁입찰 등의 절차를 거쳐 발주하여야 할 별도의 공사를 설계변경에 반영하여 [표 2]와 같이 공사비 305,450천 원(제경비 포함)을 증액해 기존 계약상대자[(주)▲▲▲▲]에 사실상 수의계약 혜택을 주어 다른 업체의 입찰 참여 기회를 상실케 하였다.

---

20) 4호 송수관로 L=2,876m(전체 L=4,576m) : 1,2,3호 송수관로 매설 중복구간(L=1,700m)은 시공  
6호 급수관로 L=1,302m  
4호 배수지 1개소

[표 2] 시공계획 변경 현황

(단위 : 천 원)

구분	계약일	계약금액 (도급액)	증가액	공사내용	비고
최초계약	2019.12.26.	2,059,027			
변경계약 (6차)	2021.06.18.	2,905,850	증 305,450	4호 송수관로 L=2,876m 6호 급수관로 L=1,302m 4호 배수지 1개소 (공사기간 180일 증가)	5차 변경 대비 증가

※ 영주시 제출자료 재구성

## 2. 부당한 사유로 계약기간 연장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4호, 2020. 6. 15.)」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재해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의 경우, 그 밖에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 안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연배상금률(0.5/1000)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 계약은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호우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영주시 ㉠과는 ‘㉡면 ㉢리 양수장 설치공사’를 추진하면서 시공사인 (주)㉣㉤㉥의 요청으로 여름철 긴 장마 및 지속적인 태풍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신청에 대해 51일간의 공사기간 연장 승인을 하였다.

그런데 (주)㉣㉤㉥이 영주시 ㉠과로 제출한 ‘여름철 긴 장마 및 지속적인

태풍에 따른 공기연장 요청 건(2020. 11. 11.)' 서류를 살펴보면 강우로 인하여 작업을 하지 못하였다고 신청한 공사기간 연장일수(51일)는 강우량 1mm를 초과한 강우일수로 [표 3]과 같이 산정하였으나, [표 3]의 강우량 1mm 미만 일수(7일) 및 [표 4]의 최근 10년간 영주시 강우 일수(42일)를 제외하면 적정한 공사기간 연장일수는 2일(51일-7일-42일)에 불과함에도 위 부서에서는 부적정하게 계약기간을 51일 연장 승인(2020.11.23.)하여<sup>21)</sup> 71,193천 원 정도(2,905,850천 원 × 0.5/1000 × 49일<sup>22)</sup>의 지연배상금을 면제해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3] 영주시 2020년(7~9월) 강우량 현황(기상청 자료)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강우 일수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계																	51일
7월	4.5			1.0		2.2				17.9		11.4	92.9	1.2	3.8		19일
				0.2	17.0		32.3	91.9	37.9	3.3	2.1	2.3	12.0	60.4	51.6		
8월	6.8	72.2	5.2	34.1	15.1	33.2	8.2	26.0	11.9	48.3	62.2	0.5			4.0		21일
							5.6	1.9			4.5	14.2	16.4	22.2	44.3	0.3	
9월		15.1	29.8		0.1	14.4	35.8		1.3	0.1	0.2	8.6					11일
	2.2			0.7													

※ 영주시 제출자료 재구성

[표 4] 영주시 10년간 강우 일수 현황(기상청 자료)

구분	2010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평균	
강우 일수	계										42일	
	7월	17일	19일	13일	24일	15일	17일	15일	20일	8일	14일	16일
	8월	22일	19일	19일	12일	21일	11일	7일	17일	12일	13일	15일
	9월	14일	9일	12일	14일	7일	6일	17일	8일	12일	12일	11일

※ 영주시 제출자료 재구성

### 조치할 사항 영주시장은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② 부적정한 사유로 계약기간을 연장한 기간 중 실제 작업한 31일에 대하여

21) 당초(366일) 2019.12.26. ~ 2020.12.25.

변경(417일) 2019.12.26. ~ 2021.02.14.(51일 연장)

22) 공사기간 연장 일수 2일(51일-7일([표3] 1mm 안되는 일수)-42일[표4])이 적정

준공예정일 : 2022.6.16.

실준공일 : 2022.6.16.

노무비 지급 명세서(2020.7~9월)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한 51일 중 31일에 대해서 노무비를 지급하였음

「지방계약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지연배상금 회수 방안 등을 검토 후  
적정하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경 상 북 도

## 시 정 요 구

제 목 도로 선형개량공사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영주시  
 관 계 부 서 〇〇과  
 내 용

영주시 〇〇과에서는 〇〇면 〇〇1리(면도102호) 선형개량공사 외 1개소의 사업을 아래 [표]와 같이 추진 중에 있다.

[표] 사업현황

공사명	사업량	사 업 비(백만 원)			계약일	사업기간	도급자	비고
		계	도급	관급				
〇〇면 〇〇1리 (면도102호) 선형개량공사	도로확포장 L=928m	1,716	1,217	499	2021.12.8.	2021.12.14~ 2023.12.13.	▲▲▲▲(주) 〇〇〇	공정률 15%
〇〇동 〇〇〇 (지방도935호) 선형개량공사	도로확포장 L=455m	1,766	1,346	420	2018.12.17	2018.12.21~ 2022.11.22	▽▽▽▽▽(주) 〇〇〇	공정률 50%

### 1. 품질시험계획 미승인 등 품질관리 부적정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및 제90조에 따르면 총 공사비가 5억 원 이상 토목공사에 대하여 건설사업자는 시험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확인을 득한 후 착공 전 발주자의 승인을 받고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을 선임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및 [별표 5]에 따르면 초급 품질관리 대상공사는 품질검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시험·검사장비를

구비하고, 20㎡이상의 시험실 설치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의 건설기술인을 고용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시공단계에서 품질 확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검토·확인·지도 및 이행상태의 확인, 품질시험 및 검사성과에 관한 검토·확인 등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건설사업자는 초급 품질관리 대상 공사 착공 시 품질관리자 1명 이상을 포함한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고,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관리가 적절하게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영주시 ○○과에서는 ○○면 ○○1리(면도102호) 선형개량공사와 ○○동 ○○○(지방도935호) 선형개량공사를 추진하면서 현장에 시험장비를 일부 구비하지 않고, 품질시험기구 검교정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품질시험 항목 및 내용이 누락되는 등 품질시험계획이 부실하게 작성되었는데도 이에 대한 검토·확인이 없었고 품질시험계획도 승인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또한, ○○동 ○○○(지방도935호) 선형개량공사를 추진하면서 최초 품질관리인으로 선임된 AAA는 현장대리인으로 변경(2019. 11. 14.) 되었으며, 그 이후 감사일 현재까지 품질관리인으로 선임된 자가 없는데도 이에 대한 아무런 확인 조차 없는 등 품질관리가 소홀하게 운영되고 있다.

## 2. 공사비 과다계상 등 감독업무 소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0호, 2019. 10. 8.)」에 따르면 공사의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

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도록 하고 건설공사의 품질 및 현장의 안전 등 건설공사를 관리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385호, 2018. 7. 1.)」 제4조 및 제138조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계약서 및 그 밖에 관계 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그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공사 목적물을 제조, 조립, 설치하는 시공과정에서 가시설 공사와 영구 시설물 공사의 작업단계 별 시공상태의 확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더불어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는 공사구간의 폭이 2.75m 이상이고 길이가 200m 이상인 경우 도로 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 차단층용 및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용에 대하여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제품 소요량의 40%이상 의무 사용량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설표준품셈, 각종 제시방서 및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 및 공사감독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다 계상되어 있는 공정은 설계를 변경하여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영주시 ○○과에서는 ‘○○면 ○○1리(면도102호) 선형개량공사’를 추진하면서 순환골재(1,674m<sup>3</sup>) 및 재생아스콘(2,004톤)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공사

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골재 및 아스콘을 적용하여 자재비 37,100천 원 및 자재 운반비 10,952천 원 등 총 공사비 48,052천 원(제경비 포함)을 과다하게 반영되었는데 감사일 현재까지 이에 대한 감액이나 설계변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한, 위 부서에서는 ‘○○동 ○○○(지방도935호) 선형개량공사’를 추진하면서 절곡이 필요없는 장철근 16.268톤을 철근 가공물량으로 설계에 반영하여 사업비 2,510천 원을 과다 반영하였고, 물가변동액을 반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료 등 7개 정산항목<sup>23)</sup>에 대해 물가상승분 5,511천 원을 정산하지 않는 등 총 공사비 8,021천 원(제경비 포함)을 감액이나 설계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1차분 준공 처리를 하였다.

그 결과 순환골재 미반영 등으로 공사비 56,073천 원(제경비 포함)이 과다하게 반영되는 등 사업을 부적정하게 추진하였다.

#### 조치할 사항 영주시장은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② 품질시험계획 미승인, 품질시험장비 미비, 품질관리인 미배치 등 품질관리 소홀사항은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③ 과다 계상된 사업비 56,073천 원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감액하시기 바랍니다.(시정)

23)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 경 상 북 도

## 주 의 요 구

제 목 ○○○○○○훈련장 관리소홀 및 수도요금 감면 부적정  
소 관 청 영주시  
관 계 부 서 ○○○○과, ■■■■소  
내 용

### 1. ○○○○훈련장 시설관리 부적정

영주시 ○○○○과는 ○○○○훈련장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조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이 법과 그 밖의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한 법령 및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준수하며 사무에 종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조 제1항에서는 영주시장은 영주시의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과에서는 ○○○○훈련장에 대해 수시로 상태를 점검하는 등 시설물 관리를 성실히 하여 누수 등의 이상 유무를 파악하여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훈련장 지상 1층 여자 장애인 화장실 변기 1개가 센서 고장으로 ○○○○훈련장 건물 1층 복도에서 대변기 물 내려가는 소리가 계속해서 들리는 등 수일간 지속적으로 누수되고 있음에도<sup>24)</sup>(2021년 7월 말~8월초 기간으로 추정, 약 9일<sup>25)</sup>, 3,248톤<sup>26)</sup> 정도) 코로나19로 인해 지하 1층

24) 직수관 대변기(물을 내리면 물이 차는 구조 아님)

25) 부스텀 펌프 Q(유량) = 0.26ton/min

시설만 이용하고 지상 1층은 이용하지 않는다는 사유 등으로 화장실 대변기 누수를 뒤늦게 발견(2021. 8. 4.)하여 상하수도요금 10,813천 원이 과다 발생하는 등 시설물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2. 수도요금 감면 부적정

「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 제40조 제1항 제1호 및 「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에 따르면 수도사용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건물 안 누수로서, 수용가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였으나 계량기 이후 옥내에서 누수가 발생한 때 옥내 급수시설의 누수사용량에 대한 요금을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영주시 ■■■■소는 ⊕⊕⊕⊕과의 ‘●●●●훈련장 대변기 자동센서 고장으로 인한 누수 수리’에 대한 상하수도사용료 조정 신청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 유무에 따라 상하수도 사용요금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훈련장의 대변기 1개 누수로 인한 감면량이 2019. 1월 ~ 2021. 9월까지의 화장실 변기 누수 평균 감면량보다 월등히 많았던 점, 펌프용량 등으로 누수 일수 파악이 가능한 점 등으로 봤을 때, 수도사용자인 ⊕⊕⊕⊕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 이행 여부 및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시설물 관리 적정성 여부에 대한 충분한 검토·확인 없이 상하수도사용료 누수 조정신청서, 누수 수리 영수증 및 사진만으로 상하수도 요금 5,612천 원을 감면한 사실이 있다.

---

$$1일\ 최대(24시간) = 0.26ton \times 1,440min = 374.4ton$$

$$3,248ton \div 374.4ton = 8.7일$$

26) 직전 4개월 월 평균 사용량 45톤

[표] 화장실 변기 누수로 인한 용량별 수도요금 감면 건수 현황

(단위 : 건)

감면량 (톤)	계	2019년	2020년	2021년 9월까지	비고
계	438	135	139	164	3년간 평균 감면량 : 46톤 ●●●●●훈련장 감면량 : 1,602톤
1~100	404	125	132	147	
101~200	22	7	4	11	
201~300	9	3	2	4	
301~400	1	-	1	-	
401~500	-	-	-	-	
501~600	1	-	-	1 (505톤)	
1,601이상	1	-	-	1 (1,602톤)	5,612천 원 감면 ●●●●●훈련장 직전 4개월 월 평균 사용량 45톤

※ 영주시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영주시장은**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경 상 북 도

## 시 정 요 구

제 목 ○○지구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개발공사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영주시  
 관 계 부 서 〇〇〇〇과  
 내 용

영주시 〇〇과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지구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개발공사’를 추진하였다.

[표] 공사현황

(단위 : 백만 원)

공 사 명	위 치		사업량	도금액	계약일	사업기간	도급자	비고 (공정률)
	시	동						
○○지구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개발공사	▽▽	▲▲	집수매거(D1200) L=100m 추진관(D800) L=35.5m	1,302	2020.12.18.	2020.12.21.~ 2022.05.27.	(주)〇〇〇〇〇〇〇〇 ♡♡♡	100%

### 1.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미승인 등 안전관리 부적정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향타 및 향발기가 사용되는 건설공사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해당 공사의 건설사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받은 발주청은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으로 판정한 후 그 결과를 건설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제13항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47호, 2020. 1. 23.)」 제18조에 따르면 시공자는 공

사 목적물 및 주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㉔㉔㉔㉔과에서는 ‘●●지구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개발공사’를 추진하면서 건설기계(항타 및 항발기) 사용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설계서 내 안전관리비(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점검비용)를 반영하지 않고 공사를 시행하는 등 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2. 건설공사 품질시험계획 미수립 및 승인 절차 미이행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90조에 따르면 총공사비 5억 원 이상 토목공사에 대하여 건설업자는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확인을 득한 후 착공 전 발주자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주시 ㉔㉔㉔㉔과는 총공사비 5억 원 이상인 ‘●●지구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개발공사’를 추진하면서 (주)㉔㉔㉔㉔㉔㉔의 품질시험계획 수립을 확인하고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지구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개발공사를 추진하면서 품질시험계획 수립 지시 등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아 품질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3. 설계 및 공사감독 업무 소홀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987, 2020. 12. 16.)」 제4조, 제138조 제1항, 제142조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계약서 기타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그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독업무에 임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설계도면·시방서와 자재의 사용 및 시공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4호, 2020. 6. 15.)」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과다하게 증액하여 산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사감독자는 공사추진 시 공사가 설계도서 및 공정계획표대로 추진이 되었는지 공사 시행 단계별로 정밀히 확인·검측하여 공사시설물이 차질 없이 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당초 설계에 공사용량 및 공사자재 등이 과다 산정되었거나 현장여건의 변동 등으로 설계를 변경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를 변경하여 계약 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가. 설계검토 업무 소홀

영주시 〇〇〇〇과에서는 〇〇지구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개발공사를 추진하면서 가시설공사의 토사구간 말뚝박기(천공) 단가는 지층별 평균 천공길이 m 당 산정되는데 설계도면 상 지층별 천공길이가 4.12m임에도 불구하고 설계서 내 단가산출서에는 지층별 천공길이를 1m로 산정하여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설계 단가가 과다 계상된 채로 공사 발주되어 사업비 129,040천 원(제경비 포함) 예산이 낭비되었으며,

설계변경 시 말뚝박기(천공)에 대해 지층별 천공길이가 6.2m로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물량에 대해서는 조정된 단가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기존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사업비 38,970천 원(제경비 포함)을 과다 계상하여 설계변경한 사실이 있다.

## 나. 공사감독 업무 소홀

위 부서에서는 ●●지구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개발공사의 가시설 공사를 변경하여 추진하면서 시트파일 항타품은 계약단가에 있는 품목(시트파일 1m 항타)으로 설계변경 시 수량만 변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트파일 1본 당 13.5m 길이로 항타하는 품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당초 계획된 가시설 설치 면적보다 작게 시공하여 띠장(10본→8본), 버팀보(10본→8본) 등 가시설 자재 수량이 변경되었음에도 가시설에 대한 변경 구조검토를 실시하지 않고 공사를 추진하였으며, 부적정하게 추진된 가시설 공사로 과다 계상된 사업비 22,570천 원(제경비 포함)을 감액하지 않고 공사를 준공한 사실이 있다.

또한, 하상 바닥 내 관로공사 추진 시 하천수 유입을 막기 위한 가물막이 설치 L=278m가 설계에 반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 없이 상류구간 L=120m만 설치하는 등 사업비 6,626천 원(제경비 포함)을 감액하지 않고 공사를 준공한 사실이 있다.

### 조치할 사항 영주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② 부당 지급된 사업비 29,196천 원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회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경 상 북 도

## 시 정 요 구

제 목                   ●●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및  
 ●●●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영주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영주시 ●●●●과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및 ●●●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을 준공 또는 추진 중에 있다.

[표] 공사 현황

(단위 : 백만 원)

공시명	위치		사업량	도금액	계약일	사업기간	도급자	비고 (공정률)
	읍면	리동						
●●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	♠♠	하천정비 L=2.05km 교량(암거)개체 9개소	5,236	2019.7.19.	2019.07.25.~ 2022.05.01.	(주)●●●●● ●●●	100%
●●●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	▽▽	우수저류조 V=4,600m <sup>3</sup>	3,745	2021.11.09.	2021.11.19.~ 2023.11.18.	(시공사) (주)●●●●●●● ♥♥♥ (건설사업관리자) (주)◇◇◇◇◇◇◇ □□□	10%

### 1.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미승인 등 안전관리 부적정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건설사업자는 높이 10미터 이상 천공기, 향타 및 항발기가 사용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받은 발주청은 건설안전점검기관에 검토를 의뢰하여 검토결과를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으로 판정한 후 그 결과를 건설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제13항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94호, 2021. 6. 29.)」 제18조에 따르면 시공자는 공사 목적물 및 주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영주시 ●●●●과에서는 ◎◎◎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면서 높이 10미터 이상인 천공기, 향타 및 향받기를 사용함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공사임에도 설계서 내 안전관리비(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점검비용)를 반영하지 않고 공사를 시행하는 등 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2. 공사감독 업무 소홀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385호, 2018. 7. 1.)」 제4조, 제138조 제1항, 제142조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계약서 그 밖에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그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독업무에 임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설계도면·시방서와 자재의 사용 및 시공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7호, 2018. 12. 1.)」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과다하게 증액하여 산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사감독자는 공사추진 시 공사가 설계도서 및 공정계획표대로 추진이 되었는지 공사 시행 단계별로 정밀히 확인·검측하여 공사시설물이 차질 없이 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당초 설계에 공사용량 및 공사자재 등이 과다 산정되었거나 현장여건의 변동 등으로 설계를 변경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를 변경하여 계약 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영주시 ●●●●과에서는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교량 가시설 공사에 대해 당초 교량(ㄷㄴㄱ7교) 교대 가시설(시트파일) 압입 공법을 워터젯 공법으로 설계하였으나, 현장 지질여건 상 시트파일 항타공법이 적용 가능함에 따라 바이브로 해머를 이용한 항타 공법으로 추진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공법변경 및 사업비 13,530천 원(제경비 포함)을 감액 조치하지 않았으며,

또한, 교량공(ㄷㄴㄱ7,8,9교)을 추진하면서 당초 계획된 가시설 설치 면적보다 작게 시공하여 띠장(24본→16본), 버팀보(29본→19본), H형강(96본→88본), 화타쌓기 미설치 등 가시설 자재 수량이 변경되었음에도 가시설에 대한 변경 구조 검토를 실시하지 않고 공사를 추진하였으며 사업비 28,000천 원(제경비 포함)을 감액하지 않고 공사를 준공한 사실이 있다.

### 3.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 부적정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987호, 2020. 12. 16.)」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시공이 설계도면 및 지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공종별로 확인하여야 하며, 시공계획서에 의한 일정 단계의 작업이 완료되면 시공자로부터 검측요청서를 제출받아 그 시공 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가능한 한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공과정에서 수시 입회·확인토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지침 제97조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현지여건

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여 발주청에 실정보고하고, 발주청의 방침을 득한 후 시공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추진 시 공사가 설계도서 및 공정계획표대로 추진이 되었는지 공사 시행 단계별로 정밀히 확인·검측하여 공사시설물이 차질 없이 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설계 또는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청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주)◇◇◇◇◇가 ●●●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저류지 굴착구간의 지하수 누수방지를 위해 설계된 가시설 시트파일 지수재를 도포하지 않고 시트파일을 압입하여 가시설 공사를 추진하였으며,

또한, 흙막이 가시설인 시트파일을 1본당 10~11m 규격으로 시공하기 위해 시트파일 2본을 이음 용접하도록 설계가 되었으나, 1본당 10~11m 규격으로 가공된 시트파일을 현장에 반입함에 따라 연결 및 용접 시공하지 않았음에도 이에 따른 실정보고 및 57,718천 원(제경비 포함)을 감액조치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4. 발주청의 건설사업관리 총괄수행 지도·점검 미흡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2 제6항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 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385호, 2018. 7. 1.)」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계획·설계·발주, 건설사업관리·시공·사후평가 전반을 총괄하고, 건설사업관리, 설계 및 시공 계약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 협력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영주시 ●●●●과에서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건설사업관리 업

무수행이 부적정하였음에도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자로서의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영주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건설사업자에 대해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 등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③ 과다 계상된 사업비 92,226천 원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감액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④ 부당 지급된 사업비 41,530천 원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회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경 상 북 도

## 시 정 요 구

제 목 ○○면 농어촌생활용수 공급사업(1차 공사분 및 ○○·○○지구)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영주시

관 계 부 서 ■■■■■소

내 용

영주시 ■■■■■소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면 농어촌생활용수 공급사업 (1차 공사분 및 ○○·○○지구)을 준공 또는 추진 중에 있다.

[표] 공사 현황

(단위 : 백만 원)

공 사 명	위 치		사업량	도급액	계약일	사업기간	도급자	비고 (공정률)
	읍면	리동						
○○면 농어촌생활용수 공급사업(1차 공사분)	○○	○○	송수관로(D200) L=3.67km 배수관로(D200) L=1.58km	1,680	2020.6.26.	2020.06.29.~ 2021.08.29.	(주)○○○○○ ○○○	100%
○○면 농어촌생활용수 공급사업(○○·○○지구)	○○	○○	상수관로 L=14.25km 배수지 1개소	2,804	2020.12.16.	2020.12.21.~ 2023.03.25.	(주)○○○○○○○○ ○○○	90%

### 1. ○○면 농어촌생활용수 공급사업 분할 발주 부적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동일 구조물 공사와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공종별로 분할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부서에서는 단일 공사건으로 설계된 공사의 경우 분할하지 않고 일괄 발주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영주시 ■■■■■소에서는 ●●면 농어촌생활용수공급사업 ‘1차 공사분’과 ‘●●·●●지구’를 추진하면서 단일공사건으로 설계가 되었음에도 동일연도에 상·하반기로 공사를 분할하여 발주하였으며, 일괄 발주 시 현장사무실 통합사용, 중기 운반비 절감, 자재비·노무비 절감 등 원가계산 비용을 절감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음에도 임의로 분할 발주하여 21,900천 원의 예산이 낭비된 사실이 있다.

## 2. 품질시험계획 미승인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및 제90조에 따르면 총공사비가 5억 원 이상 토목공사에 대하여 건설사업자는 시험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확인을 득한 후 착공 전 발주자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사업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을 선임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및 [별표 5]에 따르면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중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이하 ‘초급 품질관리 대상공사’)는 품질검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시험·검사장비를 구비하고, 20㎡ 이상의 시험실 설치 및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을 품질관리자로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영주시 ■■■■■소에서는 ‘●●면 농어촌생활용수 공급사업 “1차 공사분” 및 “●●·●●지구”사업을 추진하면서 총공사비 5억 원 이상의 초급 품질관리 대상임에도 품질시험계획서에 대한 검토나 승인 통보를 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여 품질관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 3.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미승인 등 안전관리 부적정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5호에 따르

면 향타 및 향발기가 사용되는 건설공사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해당 공사의 건설사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받은 발주청은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으로 판정한 후 그 결과를 건설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62조 제13항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47호, 2020. 1. 23.)」 제18조에 따르면 시공자는 공사 목적물 및 주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영주시 ■■■■■소에서는 ●●면 농어촌생활용수 공급사업(●●●●●지구)을 추진하면서 향타 및 향발기가 사용되는 공사임에도 건설업자[(주)■■■■■■■■■■]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 또는 건설안전점검기관에 검토 의뢰하지 않았고, 공사기간 중 용수관로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감사일 현재까지 정기 안전점검비 3,100천 원(제경비 포함)에 대해 감액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 4. 공사감독 업무 소홀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0-306호, 2020. 3. 31.)」 제4조, 제138조 제1항, 제142조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계약서 그 밖에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그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독업무에 임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설계도면·시방서와 자재의 사용 및 시공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4

호, 2020. 6. 15.)」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과다하게 증액하여 산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소에서는 ●●면 농어촌생활용수 공급사업(1차 공사분)을 추진하면서 용수관로 관 매달기 시공 시 당초 설계에 계상된 관로점검차를 이용하지 않고 굴삭기에 안전판을 제작하여 관 매달기 공종을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7,800천 원(제경비 포함)을 감액하지 않고 준공처리 하였으며,

송수가압장 가시설을 시공하면서 당초 계획된 가시설 설치 면적보다 작게 시공하여 H파일(24본→ 18본) 및 토류관(174m<sup>2</sup> → 151m<sup>2</sup>) 수량이 변경되었고, 가시설 변경에 대한 구조검토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사업비 12,000천 원(제경비 포함)을 감액하지 않고 공사를 준공한 사실이 있다.

#### 조치할 사항 영주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과다 계상된 사업비 3,100천 원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감액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③ 부당 지급된 사업비 19,800천 원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회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경 상 북 도

## 주 의 요 구

제 목	건축허가(신고) 업무 부적정
소 관 청	영주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영주시 ○○과에서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신고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1. 허가 대상 건축물 신고 수리

「건축법」 제11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연면적 합계가 100㎡ 이하인 건축물인 경우 및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하면 건축주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 등을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하고, 공사감리자는 관계 법령에 대한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건축주에게 알린 후 시공자에게 시정하거나 재시공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공사를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그런데 영주시 ○○과에서는 [표 1]과 같이 2건의 건축신고에 대하여 3층

이상이며 증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건축허가 대상임에도 건축신고로 처리하는 등 건축신고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그 결과 공사 과정에서 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하도록 관리·감독해야 할 공사감리자 없이 건축허가 대상 공사를 하고, 안전 및 품질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어렵게 하는 등 건축신고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표 1] 건축신고 수리 부적정 현황

구분	대지위치	신고신청일 (신고수리일)	건축주	용도	연면적(㎡)		비고
					기존	신청	
증축	영주시 ㄱ동 689-10	2021.7.23. (2021.8.5.)	AAA, BBB	창고 시설	175.21	70.2	52.68㎡ 초과
"	영주시 ㄱ동 394-5	2020.4.16. (2020.4.28.)	CCC	창고 시설	98.4	52.08	42.24㎡ 초과

## 2. 내화구조 검토 부적정

「건축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르면 3층 이상의 건축물은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665호, 2020. 1. 25.)」 제3조에 따르면 내화구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붕의 경우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 철재로 보강된 유리블록 또는 망입유리(두꺼운 판유리에 철망을 넣은 것을 말한다)로 된 것,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기준에 따라 인정한 구조 등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영주시 ○○과에서는 아래의 [표 2]와 같이 ㄴ동 845-11번지 외 2필지 상에 건축주 DDD가 신청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의 신축허가를 처리하

면서 지붕의 심재가 준불연 단열재인 샌드위치패널로 내화구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관련규정 검토를 소홀히 하여 건축허가를 처리해 준 사실이 있다.

[표 2] 주요구조부 내화구조 미설치 현황

구분	대지위치	허가신청일 (허가처리일)	건축주	용도	연면적(㎡)	층수	비고
신축	영주시 L동 845-11, 845-12, 845-20	2020.11.10. (2020.12.14.)	DDD	제2종 근생, 단독주택	825.02	3	내화구조 미설치 (난연지붕 설치)

**조치할 사항 영주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경 상 북 도

## 시 정 요 구

제 목 ○○○○○○공원 및 지하주차장 복합시설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영주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영주시 ◆◆◆◆과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2021. 12. 24. ♥♥♥♥♥♥(주) (대표 ○○○○)와 공사계약을 하여 ‘○○○○○공원 및 지하주차장 복합시설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표] 공사 현황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계약금액	도급자	비고
○○○○○공원 및 지하주차장 복합시설 조성사업	지하 공영주차장 1식 작은도서관(157.1㎡)	2021. 12. 30. ~ 2023. 1. 22.	4,298	♥♥♥♥♥ ♥♥(주)	

### 1. 안전관리 업무 부적정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의하면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 받아야 하는 높이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높이 2미터 이상의 흠막이 등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사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건설 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검토결과를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으로 판정한 후 그 결과를 건설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제출받아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서 사본과 검토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부서에서는 ‘○○○○○공원 및 지하주차장 복합시설 조성사업’이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일 경우 그 계획을 제출받아 검토·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영주시 ◆◆◆◆과에서는 ‘○○○○○공원 및 지하주차장 복합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안전관리계획이 제출되었음에도 검토기관을 지정해주지 않고 별도 승인 없이 공사를 시행하는 등 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2. 품질시험계획서 미승인 등 품질관리 부적정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및 제90조에 따르면 연면적 660㎡ 이상 건축공사에 대하여 건설사업자는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확인을 득한 후 착공 전 발주자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을 고용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및 [별표 5]에 따르면 총공사비가 100억 원 이하이며,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품질검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시험·검사장비를 구비하고, 20㎡ 이상의 시험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품질검사 대장 작성·관리 및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을 할 때에는 발주자가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제3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시공단계에서 품질 확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검토·확인·지도 및 이행상태의 확인, 품질시험 및 검사성과에 관한 검토·확인 등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부서에서는 ‘○○○○○공원 및 지하주차장 복합시설 조성사업’의 품질시험계획의 검사 장비 구비, 시험실 설치 등이 관련 법령에 따라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영주시 ◆◆◆◆과에서는 ‘○○○○○공원 및 지하주차장 복합시설 조성사업’을 실시하면서 품질시험계획서를 승인·통보하지 않았고, 시공업체가 2022. 5. 9. 1신도시 주차타워 조성사업 현장의 품질시험실과 같이 쓰도록 발주청에 요청하기 전까지 품질시험실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품질시험계획에 반영된 시험 항목 중 철근콘크리트용 봉강의 외부시험 미의뢰, 굳지 않은 콘크리트 시험을 일부만 시행하는 등 계획상의 시험을 전부 시행하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검토·확인을 하지 않는 등 품질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3. 현장대리인 자격 부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르면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별표 5]에 따른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은 공사 예정금액이 30억 원 이상일 경우 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해당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주시 ◆◆◆◆과에서는 공사예정금액이 30억 원 이상인 ‘○○○○○공원 및 지하주차장 복합시설 조성사업’ 공사현장에 관련 법령의 기준에 적합한 건설기술인을 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과에서는 공사금액이 4,298,051천 원인 ‘○○○○○공원 및 지하주차장 복합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실제 배치된 건설기술인은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도 없고 중급기술인으로써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를 한 경력이 철근콘크리트 공사 232일로 3년이 되지 않음에도 건설기술인 교체를 지시하지 않고 공사를 계속 하고 있다.

### 4. 실정보고 및 설계변경 미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80호, 2021. 9. 30.)」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과다하게 증액하여 산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설표준품셈, 각종 제시방서 및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다 계상되어 있는 공정은 설계를 변경하여 계약 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영주시 ◆◆◆◆과에서는 ‘○○○○○공원 및 지하주차장 복합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조립식 가설울타리 설치(253m) 시 기초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않았는데도 사업비 7,178천 원, 사토 운반 거리가 실제로 사업장(영주시 ㄱ동 1622-1번지)에서 반출지(영주시 ㄴ면 ㄷ리 765-1번지)까지 13km이나 당초 설계한 20km로 적용하여 사업비 28,313천 원, 조적공사 시 1층은 소운반이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적용하여 사업비 3,545천 원, 칠공사 시 콘크리트면 바탕처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콘크리트면 정리를 별도로 계상하여 사업비 2,262천 원이 과다하게 적용되었는데도 설계변경이나 감액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그 결과 총 공사비 64,013천 원(제경비 포함)이 과다하게 반영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조치할 사항 영주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시험실 설치 등 품질관리 미흡 사항은 「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③ 건설공사 현장에 적정한 현장대리인이 배치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적절하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④ 과다 계상된 사업비 64,013천 원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감액하시기 바랍니다.(시정)